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1호

2011. 6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 차

제 1 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EU

- 1. EU11
 - 가. EU VAT 지침 시행규칙 발표11
 - 나.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세제 개정안12
- 2. 2010년 이후 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14

II EU 등 해외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사례 · 현황 및 방향에 대한 조사

- 1. 개관16
- 2. 현행 EU 부가가치세 규정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17
 -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과정 및 내용17
 - 나.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의 문제점19
- 3. 주요 EU 회원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용 현황20
 - 가. 영국20
 - 나. 프랑스21
 - 다. 독일22
 - 라. 오스트리아23
 - 마. 아일랜드24
 - 바. 스웨덴24
 - 사. 벨기에25
 - 아. 요약26

4. EU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방향	27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 배경	27
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 과정	28
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정(Directive 2010/45/EU)	29
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33
5. EU 이외의 국가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현황	34
가. 칠레	35
나. 대만	37
다. 요약	42
6. 결론	43

제 2 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47
가. 미국 2012 회계연도 예산안	47
나. 미국 국세청 2011년 추진정책	55
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법(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의 세부규정 발표	57
라. 미국 전자행정에 관한 보고서 발표	60

2. 캐나다	63
가. 캐나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63
나. 캐나다 예산안 발표	64

II 유럽

1. 그리스	70
가. 그리스 세제 개편, 투자촉진법 및 탈세방지법 발표	70
2. 네덜란드	72
가. 네덜란드 고정사업장의 자본배부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72
나. 네덜란드 연결과세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73
다. 네덜란드의 '세제정책보고서' 발표	75
라. 네덜란드의 기능통화 과세제도 관련 시행지침 발행	78
3. 뉴질랜드	79
가. 뉴질랜드의 예산안 발표	79
4. 독일	82
가. 독일 2011년 조세간소화법안 채택	82
나. 독일 조세간소화법 입법추진	83
5. 스페인	86
가. 스페인 2011년 조세관리 운영지침	86
나. 스페인 지속가능경제법(sustainable economy law) 공표	87
다. 스페인 게임법 도입	88

6. 아일랜드90

 가. 아일랜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90

 나. 아일랜드 2011 재정법 발표93

7. 영국96

 가. 영국 2011회계연도 예산안96

8. 이탈리아102

 가. 이탈리아 로마의 여행자세(tourist tax) 도입102

 나. 이탈리아 임대소득에 대한 단일세제(flat tax) 도입103

 다. 이탈리아의 피지배외국회사(CFC)에 관한 시행지침 발표104

9. 폴란드106

 가. 폴란드 일부 세법개정 사항106

10. 프랑스107

 가. 프랑스 2011년 재정법 확정107

 나. 프랑스 정부의 2011년 수정 예산안 채택111

Ⅲ

아시아

1. 대만113

 가. 대만의 '특종물품 및 용역세 조례' 초안 발표113

2. 중국	114
가. 중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114
나. 중국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의 세무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행정규칙 (Notice 26) 발표	117
다. 중국 거주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입	118
라. 중국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세혜택 조치	119
3. 홍콩	120
가. 홍콩 2011-2012 예산안 발표	120

제1부 표 목차

〈표 I-1〉 2010/11 부가가치세 세율변화 국가	14
〈표 II-1〉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칭과 정의에 대한 지침 개정 전후 비교	30
〈표 II-2〉 전자세금계산서의 적용 요건에 대한 지침 개정 전후 비교	31

제2부 표 목차

〈표 I-1〉 미국의 예산추이	47
〈표 I-2〉 혁신, 기초 인프라 및 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적자 증가	49
〈표 I-3〉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 증가	51
〈표 I-4〉 세법개정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53
〈표 I-5〉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적자 증가	55
〈표 I-6〉 2010년과 2011년 주요 세무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율	61
〈표 I-7〉 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의한 재정지출 규모	65
〈표 II-1〉 영국의 은행세율 적용 현황	99
〈표 III-1〉 특종물품 및 세율	114
〈표 III-2〉 연도별 APA 착수건수	115
〈표 III-3〉 홍콩의 근로소득세율(누진세율)	121
〈표 III-4〉 홍콩의 근로소득세율(표준세율)	121
〈표 III-5〉 홍콩의 이윤세율	122
〈표 III-6〉 홍콩의 재산세율	122
〈표 III-7〉 동산 거래에 대한 인지세율	122
〈표 III-8〉 근로소득세 계산시 공제액	123

그림 목차

[그림 II-1] 칠레 종이세금계산서 활용 방식	35
[그림 II-2] 칠레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방식	36

I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EU

가. EU VAT 지침 시행규칙 발표

[조세동향 11-09]

- EU 이사회(EU council)는 2011년 3월 15일에 현행 EU directive상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사업지(place of establishment)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사회 시행규칙(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No. 282/2011)을 발표함
 - 현행 용역의 공급지 결정에 관한 EU directive 규정에 따르면, 사업지(place of establishment)와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사업지(place of establishment)와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의 정의는 EU 역 내의 B2C 거래(전자상거래,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와 관련하여 중요함
 - 특히 여러 국가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결정이 어려움
 - 이 시행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회원국의 세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1) 현행 EU VAT 지침

- 2006 VAT directive 제45조에 따르면, 비사업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지(place of establishment)임
 - 하지만 용역이 사업지(place of establishment)가 소재하는 국가에 있지 않은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의 소재지가 용역의 공급지가 됨
 - 한편, 사업지(place of establishment)나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지는 공급자의 거소지(usual residence)나 주소지(permanent address)가 됨

- 2006 VAT directive에 따르면, 사업지(place of establishment)는 공급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도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음

2) 사업지(place of establishment) 정의

-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6 VAT directive의 제44조, 제45조의 적용에 있어, 사업자의 사업이 설립·수행(established)되는 장소는 사업의 중심적인 관리기능이 수행되는 장소임
 - 위에서 언급된 장소의 결정에는, 첫째 사업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장소, 둘째 등록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 셋째 경영자가 회의를 하는 장소가 고려되어야 함
 - 다만, 사업자의 사업지에는 단순히 우편주소는 포함되지 않음

3)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 정의

- 신설된 시행규칙 따르면, 고정사업장은 사업이 수행(establishment)되는 장소로 용역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영구적으로 인적·기술적 자원에 필요한 조직구조를 갖춘 곳임
 - 이는 ECJ test 제11조를 조문화한 것으로, ECJ test의 의하면, 용역의 공급이 귀속되는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은 최소한의 규모(size)를 갖고 영구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충분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가져야 함

나.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세제 개정안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1년 4월 13일에 EU 역내의 에너지관련 제품에 관한 과세제도를 재조정(restructure)하는 에너지세 시행지침(Directive 2003/96/EC)의 개정을 제안함

- 제안된 에너지세 시행지침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조세를 이산화탄소 배출과 생산된 에너지량(energy content)에 관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함

- 현행 시행지침은 전기, 발동기연료(motor fuel), 난방연료(hitting fuel) 양(量)에 관한 최소세율만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EU 조세집행위원회(EU tax commission)는 현행 소비기준제도(consumption based system)가 EU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에너지절약과 저배기량 기술의 개발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견해를 밝힘

- 새로 제안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에너지세와 생산된 에너지량에 대한 에너지세로 구분하여 부과함
 -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 배출된 이산화탄소 1톤당 20유로를 과세함
 - 생산된 에너지량에 대한 에너지세와 관련하여, 발동기연료의 경우 기가줄(gigajoule) 당 9.60유로를 과세하고, 난방연료의 경우 기가줄당 0.15유로를 과세함
 - 줄(joule, 약칭 J) : 에너지와 일의 단위로서 기호로는 J로 표현하고(1j=1N.m=107 energy), 1J은 1N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이는 동안에 하는 일 및 그 일로 환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함
 - 즉, 1J은 1W의 전력을 1초간에 소비하는 일의 양과 같음
 - 기가줄(gigajoule) : 1J의 10억배
 - 한편, 회원국은 사회복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난방연료에 대한 면세가 허용됨

2. 2010년 이후 각국의 부가가치세율 변화 추이

〈표 1-1〉 2010/11 부가가치세 세율변화 국가

국가	대상세목	대상기간	세율변화		
			전	후	상태
캐나다	퀘백매출세	2011.1.1~	7.5%	8.5%	인상
아일랜드	부가가치세	2013.1.1~	21%	22%	인상
		2014.1.1~	22%	23%	인상
포르투갈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21%	23%	인상
영국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4~	17.5%	20%	인상
스위스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7.6%	8%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2.4%	2.5%	인상
	부가가치세(특별세율)		3.6%	3.8%	인상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19%	20%	인상
폴란드	부가가치세(초경감세율)	2011.1.1~	0%, 3%	5%	인상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2%	23%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7%	8%	인상
라트비아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21%	22%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10%	12%	인상
그리스	부가가치세(최저세율)	2011.1.1~	5.5%	6.5%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11%	13%	인상
뉴질랜드	일반매출세(표준세율)	2010.10.1~	12.5%	15%	인상
채널군도(Jersey)	일반매출세	2011.1.1.~	3%	5%	인상
바베이도스	부가가치세	2010.12.1~	15%	17%	인상
리히텐슈타인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7.6%	8%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2.4%	2.5%	인상
	부가가치세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세율)		3.6%	3.8%	인상
스리랑카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율	2011.1.1~	20%	12%	인하
보츠와나	부가가치세	2010.4.1~	10%	12%	인상
피지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12.5%	15%	인상

자료: Indirect tax in 2011, Ernst& Young

- 2010년과 2011년 초까지 부가가치세율에 변화가 있었던 국가를 조사함
 - 조사목적은 2009년 9월 조세동향 자료와 비교하여 일정한 추세 등을 파악하기 위함
 - 2009년 9월 조세동향자료¹⁾에서 유럽이 급증하는 정부부채 관련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는 내용을 다룬 바 있음

- 2010/11에 부가가치세 세율에 변화가 있었던 국가 중 스리랑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음
 - 폴란드의 초경감세율은 개정 전 서적에 대해 0%세율, 미가공식품에 대해 3%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5%세율을 도입하게 됨
 - 스리랑카의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전체 세율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치품과 금융서비스에 한정된 것임

- <표 1-1>을 2009년 9월에 발간된 조세동향자료와 비교해보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라트비아는 2009년 1월 1일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을 21%로 인상한 후 2011년 1월 1일부터 22%로 추가 인상하는 조치를 취함
 - 영국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17.5%→15%)하였다가 2010년 1월 1일에 부가가치세율을 회복시켰고(15%→17.5%),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4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인상(17.5%→20%)함

1) 조세동향 09-17

II

EU 등 해외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사례 · 현황 및 방향에 대한 조사

1. 개관

- 우리나라는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²⁾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함

-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제적 효과와 운영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중임

- 우리나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해외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EU를 비롯한 해외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현행 EU 부가가치세 규정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EU 회원국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및 운영 현황
 -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의 존재 여부, 적용 요건,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발급 대상, 특혜 등
 - EU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방향

2)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의 배경과 개선 과정 및 향후 개선방향 등
- EU 이외의 국가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현황
- 칠레와 대만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 현황

2. 현행 EU 부가가치세 규정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³⁾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과정 및 내용

- EU의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2006년 11월 발표한 제6차 EU 지침(Directive 2006/112/EC, 이하 EU VAT Directive)임
 - 유럽이사회는 EU 회원국에 통일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기 위해 1967년 4월 제1차 EU VAT Directive를 제정하였으며, 이 지침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2011년 현재에는 제6차 EU VAT Directive가 적용중임
 - EU 회원국들은 제6차 EU VAT Directive를 기본 지침으로 하여 각국의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EU VAT Directive상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도입 또는 개정됨

1) Commission Recommendation 1994/820/EC(1994년)

- 1994년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집행위원회 제안지침(Commission Recommendation 1994/820/EC)이 발표되어 전자문서교환 방식이 법률상 공식적인 자료교환 방법으로 인정됨
 - 전자문서교환 방식이란 기업 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

3) European Commission (ec.europa.eu/internal_market/payments/einvoicing/index_en.htm)

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으로, 기업 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수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임

2) Directive 1999/93/EC(1999년)

- 1999년 Directive 1999/93/EC가 발표됨으로써,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및 “고급 전자서명(advanced electronic signature, AES)”을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최초로 신설됨
 -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 등의 증명, 인정 또는 승인을 위한 전자 형태의 자료임
 - 고급 전자서명이란 보다 엄격한 전자서명의 형태로서,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고급 전자서명으로 인정됨
 - ① 서명인에게만 서명이 연결(link)되어야 함
 - ②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③ 서명자에 의해서만 배타적인 방법으로 서명되어야 함
 - ④ 이후 데이터의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송된 데이터와 연결되어야 함
 - 전자서명 및 고급 전자서명의 도입은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 방식의 자료도 전자서명을 통해 무결성(integrity)을 확보하면 종이 자료(paper-based data)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Directive 2001/115/EC(2001년)

- 2001년 12월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가능 여부와 발행 요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Directive 2001/115/EC가 발표됨
 - 이 규정은 “세금계산서는 고객의 동의하에 전자 방식(electronic means)으로 발행될 수 있다”는 규정을 EU VAT Directive에 삽입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함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origin)의 진정성(authenticity)과 그 내용(content)의 무결성이 ①고급 전자서명, 또는 ②전자문서교환

- 방식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
- 고급 전자서명은 자격인증서(qualified certificate)⁴⁾가 부여된 것이어야 하며, 안전서명 생성장치(secure signature creation device)⁵⁾를 이용한 것이어야 함
- 필요시 회원국은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대한 추가 요약문서의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회원국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전자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함

4) Directive 2006/112/EC(2006) – 현행 규정

- 2006년 Directive 2006/112/EC가 발표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부가가치세 규정에 포함됨
 - 이 지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가 추가되었다는 점임
- 이 지침은 “전자 방식의 전송 또는 제공이란 유선, 무선, 광학 및 기타 전자기적 방식의 전자 기기(electronic equipment)를 이용하여 처리 또는 보관한 자료를 수신인에게 전송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삽입됨
 -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이나, 지침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invoice)”라는 명칭 대신 “전자 방식의 전송 또는 제공(transmission or provision by electronic means)”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나.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의 문제점⁶⁾

- 각 회원국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제와 EU VAT Directive 간 차이가 존재하고,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의 광범위한 도입이 어려움

4) 자격인증서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서로서, 인증서의 발행시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서가 자격인증서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인증서 내에 표시함

5) 안전서명 생성장치란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장치의 일종으로서, ① 보안이 유지되고 ② 위조를 방지하며 ③ 타인의 합법적 사용과 ④ 자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장치를 의미함

6) http://ec.europa.eu/enterprise/sectors/ict/files/eeinvoiceletter_en.pdf

- 회원국마다 전자서명을 발급받기 위한 요구 조건이 달라 회원국 간 운영호환성(interoperability)이 확보되지 못함
- 전자문서교환 방식은 경제적, 기술적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도입하기에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함
- 표준 전자시스템이 없어 EU 역내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형식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관리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간 변환 또는 대응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이와 같은 이유로 EU VAT Directive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 역내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도입률은 낮은 편임

3. 주요 EU 회원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용 현황

가. 영국

- 영국 국세청에서는 전자문서교환(EDI), 고급 전자서명(AES), 기타 방식들을 전자계산서 사용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음
- 전자계산서 사용 방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origin)의 진정성(authenticity)과 내용(data)의 무결성(integrity)이 보장되어야 함. 전자문서교환 방식과 고급 전자서명 외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 방식으로는 ① security of networks/communication links, ② access controls, ③ message transfer protocols (예를 들어 http-s 등) 등이 있음
- 영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임. 단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동일 물품 또는 같은 거래자에 대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영국의 경우 2004년 1월 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을 국세청에 고지한 후 사용 가능

했고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고지해야 했으나, 2006년 1월부터는 국세청에 고지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했던 모든 세금계산서들을 6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전자세금계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6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음
- 기재사항도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함
 - ID 번호, 공급날짜, 발급날짜, 공급자의 이름·주소·등록번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수취인의 이름·주소, 공급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 공급량과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불총액, 할인율, 부가가치세 금액, 단위당 금액 (unit price)이 표시되어야 함

나.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총거래액이 150만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150만유로가 초과되지 않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음
 - 이런 경우,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전자결재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일반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행처의 진정성과 내용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고급 전자서명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그 밖의 전자 전송방식의 경우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①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세금신고서가 구성되어야 함
 - ② 전자 전송방식이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
 - ③ 납세자가 해당 지방세무서에 전자 전송방식 사용을 알려야 함
 - ④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납세자나 수령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⑤ 발행되고 수령된 전자세금계산서들을 목록화하여 6년간 보관해야 함
- 프랑스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는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고객의 이름과 주소, 상품과 서비스의 양과 설명, 발행날짜, 공급시간과 선불 시간, 각 물품의 순가치, 세율,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세금면제 사유, 적용되는 할인이나 리베이트, 공급날짜보다 지불날짜가 이른 경우 지불날짜,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 등이 있음

다. 독일

- 독일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원칙이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동의의 형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별다른 언급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세금계산서의 형태는 ① 종이 형태의 세금계산서, ②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통한 전자 세금계산서, ③ 적격 전자 서명⁷⁾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④ 팩스를 통한 세금계산서로 나뉘어짐
- 전자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7) 적격 전자서명이란 독일 디지털 서명법(German Digital Signature Act)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임

요약본 세금계산서(VAT Summary Invoice)를 종이나 적격 전자 서명 방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팩스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송부하고 수취하는 팩스 모두가 규격화된 일반 팩스(standard fax)이어야 하고, 만일 팩스가 이러한 규격화되지 못한 경우 이더라도 서버나 컴퓨터가 중간매체가 되어 송부되는 경우라면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독일 정부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하여 종이세금계산서에 지출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의사소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독일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독일의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는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계산서의 발행날짜, 세금계산서 번호, 일반 세금번호 또는 부가가치세 번호, 공급날짜와 수취인의 선불날짜, 대가(consideration), 가격할인, 부가가치세 금액이 있음

라.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음. 이때 발행처의 진정성과 내용의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는 고급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하여 발송될 것으로 함
- 또한 Finax-Online 또는 사업 서비스 포털을 통하여 수취인이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됨
- 최근 2009년까지는 팩스 전송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도 유효하였음

- 오스트리아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수취자의 이름과 주소, 공급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과 설명, 공급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는 경우 공급날짜와 기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세율, 감면 내용,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날짜, 계산서의 ID 번호, 부가가치세 공제가 있는 경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ID 번호, 공급대가가 1만유로를 넘는 경우 수취인이 오스트리아에 주소지가 있는 기업의 경우 수취인의 부가가치세 ID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마. 아일랜드

- 아일랜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교환 방식과 고급 전자서명, 기타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이 인정됨
 - 기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이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 사실을 국세청에 고지해야 함
 - 사용하려는 시스템이 국세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기록과 자료들을 부가가치세 용도에 맞는 형태로 제공, 보존, 저장을 할 수 있어야 함
 - 전자기록과 자료들을 종이서류로도 재발급이 가능해야 함
 - 모든 기록에 ID 번호가 부과되어야 함
 - 원본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수취를 인증해야 함
 - 전송 자료와 관련 전자기록들을 전송중과 세금계산서 기록보전 기간 동안 보전해야 함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함
 - 발급 날짜, 일련 번호, 공급자의 이름·주소·등록번호, 상품의 양과 성질 또는 공급된 서비스의 성질과 정도, 단위당 금액(unit price), 부가가치세 감면사항, 부가가치세율, 납부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함

바. 스웨덴

- 스웨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방식을 특정 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단

사용 방식을 통해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원본대로 보존될 수 있어야 함

- 스웨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방식으로는 전자문서교환 방식, e-Invoice, E-Giro, self-billing,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서비스(ASP, web-EDI 등), 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스캔하는 방식 등이 있음
- 스웨덴 정부에서는 모든 정부기관은 2008년 1월까지의 세금계산서를 전자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정책결정을 했고 현재 99%의 정부기관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송부할 수 있고, 98%의 정부기관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상황임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동일함
 - 발급날짜, 일련번호, 발급자의 부가가치세 ID 번호, 공급자의 이름·주소,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수취인의 이름·주소, 공급 상품의 양과 성질, 공급받은 서비스의 정도와 성격,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된 날짜, 세율당 과세금액, 적용된 세율, 납부 금액이 표시되어야 함

사. 벨기에

- 벨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2015년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비율을 50대50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사용을 촉진시키고 있음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별히 정부에서 권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이 없으며, 사업자가 자유로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단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함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취급되며 필수기재사항도 동일함
 - 계산서 발급 날짜, 공급자의 이름과 주소, 벨기에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수취인의 이

름과 주소,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된 날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세율당 과세금액, 각종 감면 사항, 적용 부가가치세율, 전체 납부 금액, 몇 개의 계산서가 동일한 거래에서 발행된 경우 먼저 발행된 계산서

- 단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송부할 때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보존기간 동안에는 계산서 발행처의 진정성과 내용의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함

아. 요약

- 주요 EU 회원국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음
 -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년도 총거래액이 150만유로를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EU 7개 회원국 모두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특별히 종이세금계산서와 차이가 나도록 규정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여부에 따라 특별히 적용되는 특혜 규정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⁸⁾
-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방식으로는 주요 EU 7개 회원국들 모두 전자문서교환과 고급 전자서명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다르게 규정을 두고 있음

8) IBFD([www. ibfd.org](http://www.ibfd.org))의 현황 자료 기준

4. EU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방향

- 본 장에서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작업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자 함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 배경

- 현재 EU 회원국 내 일부 대규모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유럽 전체 사업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률은 낮은 편임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연구보고서⁹⁾는 현재 유럽 전체 세금계산서의 80~90%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 비용에 11.3억~16.5억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함
- 전자세금계산서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우위에 있음
 - 경제성 측면에서는 종이 및 우편비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등의 절감 효과와 빠른 의사결정에 따른 기회비용 최소화 등의 장점이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에 필요한 전자 기기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보관에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원가절감효과가 큼
 - 관련 연구보고서¹⁰⁾에 따르면 종이세금계산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의 전환은 향후 6년간 약 2,400억유로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 효율성 측면에서는 통합화 및 자동화된 프로세스 사용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 오류 최소화, 품질 관리 등의 장점이 있음

9) Capgemini Consulting, "SEPA: potential benefits at stake", 2007

10) Capgemini Consulting, "SEPA: potential benefits at stake", 2007

- 통합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이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됨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자의 발송과 거의 동시에 수령자가 수령이 가능하므로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라 대금 회수기간이 단축됨
- 이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를 통한 EU 시장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EU 역내 전자세금계산서의 광범위한 도입(massive adoption)을 목표로 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 과정

- 유럽 집행위원회는 대략 2007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함
- 유럽 집행위원회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과정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음
- 2007~2008년: 비공식적 태스크포스(task force) 결성
 - 유럽 집행위원회는 민간기업, 은행, 금융서비스업체, 표준 공식기관과 같이 다양한 관련 조직과 태스크포스를 결성하여 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함
 - 2008~2009년: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출범
 - 유럽 집행위원회는 핀란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총 16개국으로부터 31명의 전문가¹¹⁾를 모집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문가 그룹을 출범시킴
 - 이 전문가 그룹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법률적, 운영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2년간 유지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기본체계에 해당하는 유럽 전자세금계산서 체계(European e-Invoice Framework)와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을 제정함

11) 핀란드(4명), 독일(4명), 네덜란드(4명), 영국(3명), 이탈리아(3명), 스페인(2명), 덴마크(2명), 벨기에(1명), 프랑스(1명), 스위스(1명), 슬로바키아(1명), 룩셈부르크(1명), 스웨덴(1명), 라트비아(1명), 오스트리아(1명), 그리스(1명)

- 2010년 4월: 전문가그룹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 여러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전문가그룹의 연구결과 및 제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향후 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2010년 7월: Directive 2010/45/EU 발표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의 Directive 2010/45/EU를 발표함
 - 2010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의견서(communication) 채택
 - 이 의견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운영호환성(interoperability)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Directive 2010/45/EU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정한 작업으로서 중요성이 높아 그 내용을 아래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정(Directive 2010/45/EU)

- 2010년 발표된 Directive 2010/45/EC는 현행 EU 부가가치세 규정인 Directive 2006/112/EC를 개정하는 지침임
- 이 지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대등하게 취급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적용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라 볼 수 있음
 -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칭 및 정의¹²⁾

-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칭이 명시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칭이 “전자 방식의 전송 또는 제공(transmission or provision by electronic means)”에서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invoice)”로 변경되면서 보

12) Directive 2010/45/EU, Article 1, Paragraph 11 (Directive 2006/112/EC, Article 217 대체)

다 명확해짐

-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의가 “전자 형식(electronic format)으로 발행 또는 수령되는 세금계산서”로 개정되어, 기존보다 그 범위가 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됨으로써 전자 세금계산서의 도입장벽을 낮춤
- 개정 전후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I-1〉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칭과 정의에 대한 지침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Directive 2006/112/EC)	개정 후 (Directive 2010/45/EU)
<p>○ Article 217 “전자 방식의 전송 또는 제공”이란 유선, 무선, 광학 및 기타 전자기적 방식의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 또는 보관한 자료를 수신인에게 전송 또는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transmission or provision by electronic means” shall mean transmission or provision to the addressee of data using electronic equipment for processing (including digital compression) and storage, and employing wire, radio,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means)</p>	<p>○ Article 217 “전자세금계산서”란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세금계산서가 전자 형태로 발행 또는 수령된 것을 의미한다 (“Electronic invoice” means an invoice that contains the information requirement in this directive, and which has been issued and received in any electronic format)</p>

2)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대등한 취급¹³⁾

- 2010년 발표된 Directive 2010/45/EU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대등하게 취급됨
 -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과세당국의 감독권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공급거래를 반영하고, 진정성, 무결성 및 가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뢰성 있는 감사 증거(audit trail)이 확보되어야 함

13) Directive 2010/45/EU, (8)-(10)

3)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요건의 삭제¹⁴⁾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의 진정성 및 자료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급 전자서명과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가능성을 확대함
 - 고급 전자서명과 전자문서교환 방식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의 진정성과 자료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로 삽입됨
- 이 지침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의 진정성과 자료의 무결성에 대한 정의도 추가 삽입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의 진정성이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발행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자료의 무결성이란 EU VAT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표 II-2〉 전자세금계산서의 적용 요건에 대한 지침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Directive 2006/112/EC)	개정 후 (Directive 2010/45/EU)
<p>○ Article 233</p> <p>1. 전자 방식으로 송부 또는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의 진정성과 자료의 무결성이 <u>다음 두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회원국은 이를 수락할 수 있다</u> (Invoices sent or made available by electronic means shall be accepted by Member States provided that the authenticity of the origin and the integrity of their content are guaranteed by one of the following method)</p> <p>(a) 전자서명에 관한 EU 지침 제2항 2번에서 정의하고 있는 <u>고급 전자서명</u> (by means of an advanced electronic signature</p>	<p>○ Article 233</p> <p>1. <u>종이, 전자 형식 여부와 관계없이</u> 세금계산서 발행처의 진정성, 자료의 무결성 및 세금계산서의 가독성은 발행시점부터 보관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The authenticity of the origin, the integrity of the content and the legibility of an invoice, whether on paper or in electronic form, shall be ensured from the point in time of issue until the end of period for storage of the invoice)</p> <p>각 납세자는 발행처의 진정성, 자료의 무결성 및 세금계산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와</p>

14) Directive 2010/45/EU, Article 1, Paragraph 22 (Directive 2006/112/EC, Article 232-233 대체)

개정 전 (Directive 2006/112/EC)	개정 후 (Directive 2010/45/EU)
<p>within the meaning of point (2) of Article 2 of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s)</p> <p>(b) 전자문서교환 방식의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지침의 제2항에 정의된 전자문서교환 방식 (by mean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as defined in Article 2 of Commission Recommendation 1994/820/EC of 19 October 1994 relating to the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p> <p>다만, 해당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기타 전자 방식에 의해 송부 또는 작성될 수 있다 (Invoices may, however, be sent or made available by other electronic means, subject to acceptance by the Member States concerned)</p>	<p>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연결하는 신뢰성 있는 감사 증적을 생성하는 사업 통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Each taxable person shall determine the way to ensure the authenticity of the origin, the integrity of the content and the legibility of the invoice. This may be achieved by any business controls which create a reliable audit trail between an invoice and a supply of goods or services)</p> <p>“발행처의 진정성”이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발행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Authenticity of the origin” means the assurance of the identity of the supplier or the issuer of the invoice)</p> <p>“자료의 무결성”이란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Integrity of the content” means that the content required according to this Directive has not been altered)</p> <p>2. 제1항에서 설명한 사업 통제의 형태 이외에, 발행처의 진정성과 자료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Other than by way of the type of business controls described in paragraph 1,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technologies that ensure the authenticity of the origin and the integrity of the content of an electronic invoice)</p> <p>(a) 개정 전 Article 233, 1, (a) (고급 전자서명)와 동일</p> <p>(b) 개정 전 Article 233, 1, (b) (전자문서교환 방식)와 동일</p>

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추가 개정을 제안할 계획임
 - 2016년 12월 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¹⁵⁾
- 또한 법률, 기술,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1) 법률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회원국마다 전자서명을 발급받기 위한 요구 조건이 달라 회원국 간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이 확보되지 못함
-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전자서명의 인식가능성과 상호호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중 전자서명에 대한 지침을 개정할 계획임

2) 기술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간단하고 경제 적이며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함
 -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대기업, 소비자, 공공기관, 타 중소기업 사업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거래처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기술 시스템이 없다면 다양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15) Directive 2010/45/EU, Article 1, Paragraph 237

- 유럽 집행위원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예. 솔루션 개발업체 등)와 함께 투자비용이 낮고 운영이 간단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및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 2011년 경쟁력 및 혁신 프로그램(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me, CIP)¹⁶⁾에서 디지털 공급사슬(digital supply chains)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을 확대시킬 예정임

3)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 전자세금계산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자 조직과 서비스 제공업체 간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위기 관리, 의사소통 경로, 보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구인 유럽표준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이하 CEN)는 2011년 말까지 전문가 그룹이 제정한 행동규약을 보다 더 발전시킬 계획임
- 행동규약은 사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및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지침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제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각 관계조직이 담당할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함

5. EU 이외의 국가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현황

- 본 장에서는 EU 이외의 국가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고 있는 칠레와 대만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영 현황을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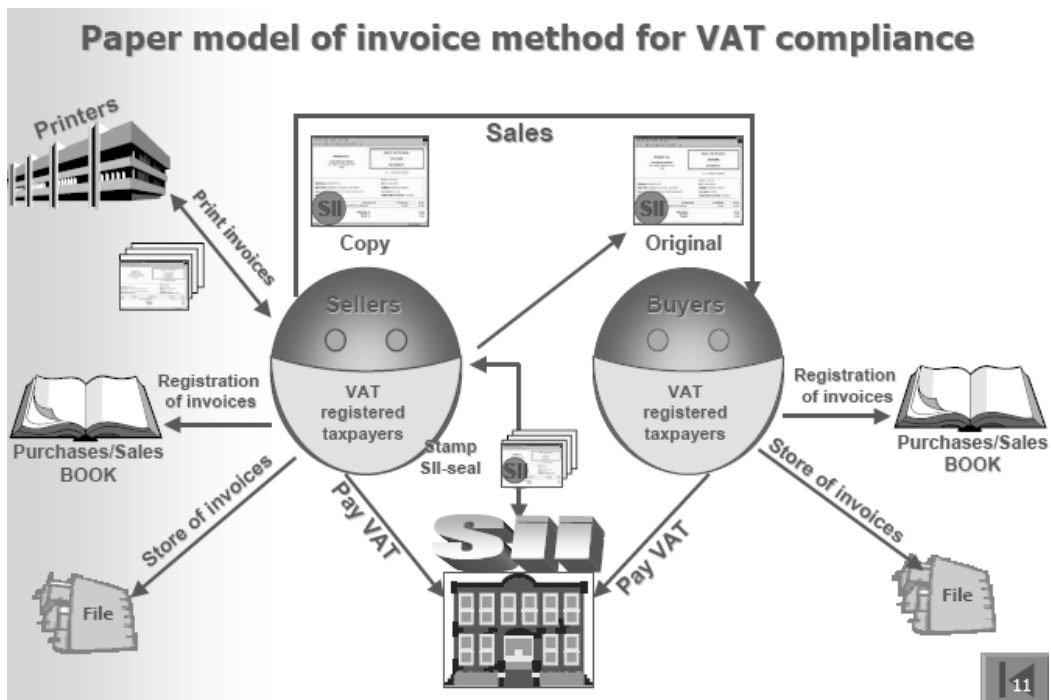
16) 경쟁력 및 혁신 프로그램이란 주로 중소기업들에게 혁신, 정보교환 기술,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운영 프로그램임

가. 칠레¹⁷⁾

- 칠레는 1975년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였고, 세금계산서를 통한 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중임
 - 부가가치세율은 19%이며, 부가가치세가 총세수의 50%를 차지함
 -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준금액(threshold)이 존재하지 않아 칠레에서 사업하는 모든 자는 등록의무가 있음

□ 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순응 과정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1-1] 칠레 종이세금계산서 활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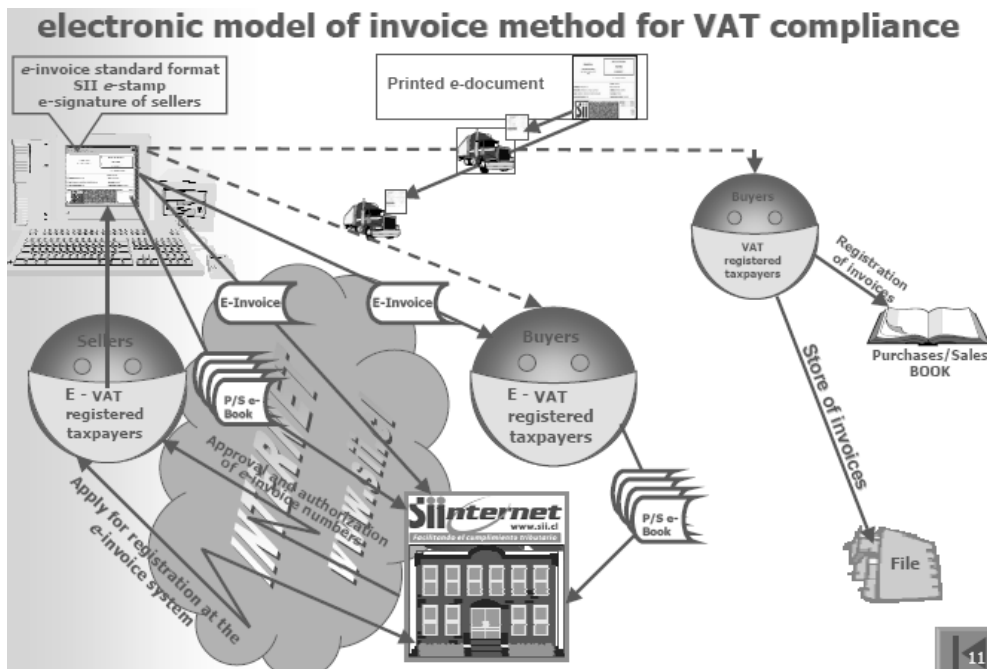


출처: Juan Toro(2005), Implementing VAT: Problems and Experiences, presented at the First Global ITD Conference on VAT, Italy, p. 27.

17) 이하의 내용은 두 가지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① Juan Toro(2005), Implementing VAT: Problems and Experiences, presented at the First Global ITD Conference on VAT, Italy; ② Fernando Barraza & Aurea Hervias(2006), Electronic Invoice(VAT), presented at the Fifth Meeting of the FTA Taxpayer Services Sub-Group, Turkey.)

- 종이세금계산서인 경우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시기에 매입자에게 원본을 발급하고, 사본은 보관하며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며 매입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함
 - 매입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원본에 따라 장부에 거래를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상에 검인(seal)을 찍어 세금계산서를 승인(authorize)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 칠레 국세청(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 SII)은 2003년 10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음
 - 납세자는 인터넷 가상 사무실(Internet Virtual Office)인 www.sii.cl 에서 '전자 납세자(e-taxpayer)' 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들만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음

[그림 11-2] 칠레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방식



출처: Juan Toro(2005), Implementing VAT: Problems and Experiences, presented at the First Global ITD Conference on VAT, Italy, p. 28.

- 전자 납세자로 등록된 공급자는 국세청 전자검인 및 발행자 서명이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양식을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전자적으로 발행(이때 국세청 전산망에도 통보됨)하고, 그 발급 기록은 전자 장부에 기재됨¹⁸⁾
 - 전자 납세자로 등록된 구매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종이로 출력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고, 전자 장부에 기록하여야 함
 - 전자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은 구매자는 종이로 출력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종이 장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원본을 보관하여야 함
 - 국세청은 접수된 전자 납세자 등록을 처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번호를 승인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매입자의 전자 장부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함
- 칠레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체계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약 420백만미국달러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체계에서는 80백만미국달러로 예측하여 약 340백만미국달러¹⁹⁾가 절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나. 대만²⁰⁾

- 대만은 주관 과세당국의 승인을 거쳐 인터넷이나 기타 전자방식을 통해 전송 및 수취하는 통일영수증인 ‘전자영수증’ 을 운영함
- 전자영수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B2B 3연식 통일영수증, 전자계산기 통일영수증 및 3연식 금전등록기 통일영수증
 - B2C 전자계산기 통일영수증
- 전자영수증은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짐

18)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전자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은 매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함

19) 칠레 GDP의 0.4%에 해당함

20) E-Invoice Portal, Ministry of Finance, R.O.C. (<http://www.einvoice.nat.gov.tw/>)

- 전자영수증은 재우송할 필요가 없으며, 유실 혹은 훼손될 가능성이 없음
- 전자영수증은 전통 영수증의 반송, 절감 작업을 간편화시킴
- 전자영수증은 인쇄의 필요가 없으며, 인력 자본금을 감소함
- 전자영수증을 미디어 파일로 보관하여, 서류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영수증 발행에 드는 원가를 감소시키며, 영수증 발행 비용이 무료임
- 영수증의 prefix 번호 및 영수증번호를 자동적으로 취함

□ 대만 정부는 전자영수증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장려책을 도입함²¹⁾

- 재무부 98.06.17 대만 재세자(财税字) 제09804544930령에 근거,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자 중에서 본 규정에 부합할 시, 세무 안건의 위반에 관련하여 감형처리 하고 있음
 - 전자영수증의 당기 발급·신고 비율이 통일영수증 발급의 전체 비율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 당기매출세액을 과소 신고한 비율이 전체 매출세액의 비율 중 7%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면함
 - 전자영수증의 당기 발급·신고 비율이 통일영수증 발급의 전체 비율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 당기매출세액을 과소 신고한 비율이 전체 매출세액의 비율 중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누락 세액의 0.5배의 벌금형에 처해짐
 - 전자영수증의 수령 비율이 통일영수증 매입 비율 중 20%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자: 매입세액을 과다신고 비율이 전체 매입세액 비율의 5% 이하인 경우 처벌을 면함
 - 전자영수증의 수령 비율이 통일영수증 매입 비율 중 20%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자: 매입세액을 과다신고 비율이 전체 매입세액 비율의 7% 이하 경우 누락 세액의 0.5배의 벌금형에 처해짐

□ 전자영수증의 정정 시기, 폐기작업 시기 등 전자영수증의 발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제기됨

- 전자영수증 정정 시기 설정(변경)
 - 판매측 사업자가 전자영수증을 발행한 이후 업로드 이전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21) 財政部98.06.17台财税字第09804544930令

-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음
 - 만일 이미 날인되어 업로드한 전자영수증의 내용상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폐기 처리하고 재발행해야 함
 - 전자영수증 폐기작업 시기
 - 만일 매입자가 이미 업로드한 전자영수증 내용상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 공급자에 의해 폐기될 수 있고, 매입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
 - 또는 매입자가 전자영수증 작업을 반송했을 경우 공급자에 의해 작업될 수 있음
 - 전자영수증 사전 발행 여부
 - 전자영수증 통합 서비스 플랫폼은 이미 사업자에게 전자영수증 사전발행 및 시스템 기한 후의 영수증 발행 기회를 제공하였음

- 전자영수증의 작업 모델로는 Web to Web 작업모델, AP to AP 작업 모델, AP to Web 작업모델, B2C 작업모델이 있음
 - Web to Web 작업 모델
 - 적용대상 : 수동적 방식을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정보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사업자(공급자, 매입자 모두 포괄)
 - AP to AP 작업 모델
 - 정보화 접근 정도가 비교적 높은 사업자(공급자, 매입자 모두 포괄)
 - AP to Web 작업모델
 - 적용대상 : 사업자 중 한 쪽은 정보화 접근성이 용이하고, 한 쪽은 정보화 접근이 어려울 경우 이용하기 적합함
 - B2C 작업모델
 - 전자영수증 추진 소위원회는 AP2AP gross weight system의 설치를 협력 및 보조하고, 사업자가 발행하는 B2C 전자 영수증을 “전자영수증 통합서비스 플랫폼”에 보 관하도록 함

- 전자영수증은 B2B식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B2C식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이 부여됨

- B2B식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영업세와 벌금, 영리사업 소득세 및 벌금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자
- B2C식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임
 - 인터넷, 카탈로그 혹은 TV 구매채널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비사업자
 - “전자계산기 통일영수증” 사용에 대해 비준을 거친 자
 - 200만 대만달러 상당의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 영업세와 벌금, 영리사업 소득세 및 벌금 등의 체납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자
 - 전자영수증을 통합서비스플랫폼에 보관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 사업자는 전자영수증 사용자격 처리 신청과정과 상공업 증빙서류 처리 신청과정을 거쳐 재정부에 전자영수증 통합서비스 등록을 완료할 수 있음
 - 전자영수증 사용자격 처리 신청(세금 조사징수기관)
 - 소재지의 관할 과세관청 심사결정: 신청 후 10일 이내에 비준 문건번호 취득, 플랫폼 계좌번호 비밀번호 발송
 - 상공업 증빙서류 처리 신청(공상증빙서류관리센터)
 - 회사, 상점소속 등기기관 심사결정: 신청 후 2주 이내에 상공업증빙카드 취득
- 재정부 통합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매입영수증 관련작업
 - 매출영수증 관련작업
 - 매입 수령 인증작업
 - 매출 수령 인증작업
 - 문의 및 다운로드
 - 수속 절차
 - 시스템 설정
 - 기본자료
 - 역사조사- B2B
 - 역사조사- B2C

- 재정부는 전자영수증 추진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전자영수증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
- 사업자들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자본운영을 절약하기 위해 대만 재정부는 2000년 11월 29일 “통일영수증 인터넷 전송 시험운용 요점”을 공포하고, 2000년 12월 1일 시험 작업을 추진하였음
 - 시험 작업중에는 각 부가가치형 서비스 센터의 공통적인 표준 운영 모형의 부재로 인해 전송양식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자체 발행한 전자영수증 등으로 인해 전송호환성이 낮아서 전자영수증 추진에 주요한 장애가 됨
 - 대만 재정부는 2009년 3월 “전자영수증 추진 소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촉진시켜, 자본 계획의 목표를 제정하였음
 - 재정부의 계획에 의거 5년 동안 전자영수증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재정부 세무국, 재무세금자료센터 및 각지 국세국이 공통적으로 “전자영수증 추진 소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음
 - “전자영수증 추진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의장 1인 설정, 제세자료센터의 주임 담당으로 본 계획 관련 사업을 책임짐
 - 이사장, 부이사장 각 1인을 두어, 의장의 본 계획 관련 사업을 처리하는 것을 보조하는 책임을 지님
 - 소위원회 내 업무분담을 추진하여 법규부, 전략추진부, 업무통합부, 특별안전심사팀 등 4개 부서를 조직하고, 그 인원은 세무국, 제세자료센터 및 각지 국세국 등 관련위원으로 구성함
 - “전자영수증 추진 소위원회”의 주요 업무²²⁾
 - 대만의 전자영수증 추진활동 보조
 - 전자영수증의 관련 계획보고 심사 및 결정
 - 전자영수증 관련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추진
 - 기타 전자영수증 추진 항목 심사 및 결정
 - 전자영수증 추진 위원회에서는 현행 부가가치형 서비스 센터 자료 중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작업에 표준성 및 규범을 확립, 영수증의 표준성을 보다 고려하고 전

22) “전자영수증 추진 심의 위원회 조직 규정”, 제3장 2조.

송환경의 장애를 제거하고 사업자들 간에 전자영수증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본 안건의 주요 목표로 제정하였음

- 성과 및 파급효과 기대
 - 전자영수증 전송환경을 구성하여 영업인과 상대 교역인 간의 전자영수증 발송 및 수취작업을 순조롭게 하고 신속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전자영수증의 효율적인 응용환경을 확립하여, 영업인의 영수증 자본금 및 시간 및 절차를 최소 50% 이상 절약함
 - 전자영수증 통합 서비스 플랫폼의 계획수립을 통해, 정부의 전자영수증 추진을 공개 표명하여 세무 관련 인력 및 사업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보급력을 강화시키고,
 -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여 2009년 말 이전에 2만여 개의 사업자들이 전자서비스 통합 플랫폼의 구체적인 추진목표에 도달할 것을 예상함
 - 완성된 종합 서비스 플랫폼과 기타 정부 세무 시스템의 매개를 조정하여, 부가가치 응용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플랫폼의 종합 서비스의 전반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
 -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때까지 본 계획을 재정부 소속의 재단법인 및 기타 기구 조직 등에 전파하여 시장 메커니즘 및 경영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함

다. 요약

- 칠레와 대만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대만의 경우, 전자영수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 칠레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 납세자(e-taxpayer)' 로 등록이 필요하며, 대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전자영수증 사용 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함
 - 칠레와 대만 모두 전자세금계산서(전자영수증)에 대해 과세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6. 결론

- 현 EU VAT Directive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 회원국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제와 EU VAT Directive 간의 차이와 통일된 시스템의 부재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률이 낮은 실정임
- 유럽 집행위원회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개선 업무를 실시함
 - 그 중에서도 2010년에 발표한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 2010/45/EU)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대등하게 취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적용 요건을 삭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노력은 앞으로 법률, 기술,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될 것임

II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I 미국 / 캐나다

1. 미국

가. 미국 2012 회계연도 예산안

[조세동향 11-05]

- 2011년 2월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예산안의 규모는 3조 700억달러이며,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 1조 1천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임
 - 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 등 연방지출을 삭감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증액될 예정임
 - 2012 회계연도 적자규모는 1.1조달러로 GDP 대비 7.0%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표 1-1〉 미국의 예산추이

(단위: 십억달러, %)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2 -	2012 -
													2016	2021
예산총액														
세입	2,163	2,174	2,627	3,003	3,333	3,583	3,819	4,042	4,257	4,473	4,686	4,923	16,366	38,747
세출	3,456	3,819	3,729	3,771	3,977	4,190	4,468	4,669	4,876	5,154	5,422	5,697	20,134	45,952
재정적자	1,293	1,645	1,101	768	645	607	649	627	619	681	735	774	3,769	7,205
GDP 대비														
세입	14.9	14.4	16.6	17.9	18.7	19.1	19.3	19.5	19.6	19.8	19.9	20.0	18.3	19.0
세출	23.8	25.3	23.6	22.5	22.4	22.3	22.6	22.5	22.5	22.8	23.0	23.1	22.7	22.7
재정적자	8.9	10.9	7.0	4.6	3.6	3.2	3.3	3.0	2.9	3.0	3.1	3.1	4.3	3.7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 조세분야의 주요 내용은 크게 혁신·인프라·교육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중산층 가구(Middle-Class Families)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재정적자 감축, 보다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구축 방안으로 나누어짐

1) 혁신, 기초 인프라 및 교육 등에 대한 세제 유인

-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제 유인 강화
 -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 건물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함
 - 기존의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 건물에 인정했던 소득공제제도 대신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건물 소유주로 하여금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적극 장려하기 위함임
 - 동 세액공제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납세자들에게 향후 5년 동안 10억달러의 감세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함
 - 첨단 에너지 제조 프로젝트(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Projects)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내국세법 제28C조상의 첨단 에너지 제조 프로그램(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Program)²³⁾에 사용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개선
 -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판매자가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꿈
 - 이런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신고절차를 더욱 쉽게 하여 실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함
- R&E(Research and Experimentation) 세액공제 영구화
 - R&E(Research and Experimentation)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에 보상할 예정임

23) 미국 재투자 및 회복법(American Reinvestment and Recovery Act)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연방세법 제48C조에 규정을 두고 있음

- R&E 세액공제는 1981년 제도화된 이후 14번에 걸친 임시연장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2011년 말에 일몰될 예정이었음
 - R&E 세액공제로 인하여 향후 10년간 1,060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소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폐지 예정
- 이 제도는 2010년 9월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에 포함되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음
 - 소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소기업 투자자들에게 향후 50억달러의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됨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제도의 영구화
-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를 영구적으로 연장하였음

〈표 1-2〉 혁신, 기초 인프라 및 교육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재정적자 증가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2-2016	2012-2021
에너지효율 상업건물 세액공제	-	450	425	100	25	25	-	-	-	-	-	1,025	1,025
첨단에너지 제조 프로젝트	-	284	731	1,089	1,138	578	120	-73	-115	-64	-27	3,820	3,661
R&E 세액공제	-	4,610	8,063	8,884	9,708	10,520	11,318	12,103	12,887	13,686	14,499	41,785	106,278
소기업투자	-	-	-	-	-	-	183	566	1,055	1,587	2,026	-	5,417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	-	650	10,772	10,832	11,552	11,533	11,364	12,111	12,117	12,665	33,806	93,596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제도란 대학생이 있는 납세자에게 4년 동안 매년 각 학생당 최대 2,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임
- 이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향후 10년간 미국 가구에 940억달러의 혜택을 줄 것으로 분석됨

2) 중산층 가구(Middle-Class Families)에 대한 세제 혜택

- 자녀·피부양자 돌봄 비용 세액공제(Tax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확대
 - 2000년과 비교해 자녀 양육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자녀·피부양자 돌봄 비용 세액공제가 이러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함
 -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²⁴⁾가 자녀·피부양자를 위해 지출한 돌봄 비용의 35%를 공제하며, 조정후총소득(이하 AGI)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이면 초과소득 2,000달러당 공제율이 1퍼센트씩 감소됨
 - AGI 기준금액 15,000달러를 75,000달러로 영구적으로 증가시키고 AGI가 103,000달러 이상인 경우 돌봄 비용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이 제도의 개정으로 AGI가 15,000달러에서 75,000달러인 가구의 세액공제 혜택이 75%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에 100억달러 상당의 절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가족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영구화
 -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EITC를 2012년까지 확대 적용되는 규정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이 제도의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120억달러의 세부담 경감을 기대함

24)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피부양자 돌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전업 학생, 장애인 또는 구직 중인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개인퇴직연금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r Annuities, IRAS) 가입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강화
 - IRAS 자동가입 확대를 위한 임시세액공제를 신설함
 -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IRAS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 2년간 250달러를 한도로 등록한 종업원 한 명당 25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IRAS 초기 도입에 대한 세액공제(Startup Costs tax credit)를 확대함
 - 소규모 고용주가 퇴직연금제도에 최초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그 한도를 3년간 500달러에서 3년간 1,000달러로 공제 혜택을 확대함
 - 이 제도의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140억달러의 세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함

〈표 1-3〉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통한 재정적자 증가

(단위: 백만달러, %)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2012-2016	2012-2021
자녀·피부양자 세액공제의 확대	-	283	1,043	1,045	1,042	1,039	1,035	1,036	1,033	1,028	1,021	4,452	9,605
대가족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 세액공제 규정의 영구 적용	-	-	81	1,422	1,442	1,469	1,509	1,544	1,579	1,610	1,657	4,414	12,313
개인퇴직연금계좌(IRAS) 가입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	-	638	1,043	1,100	1,240	1,448	1,704	2,015	2,381	2,809	4,021	14,378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3)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계획

- 고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혜택 종료
 -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법 적용이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감세 규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하에 세법개정을 추진함

- 고소득 가구에 대한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 적용을 종료함
 - 2013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50,000달러(기타 연소득 200,000달러)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 2001년도 및 2003년도 감세법 적용을 배제함
 - 고소득 가정에 대한 유산세(Estate tax) 감면혜택을 종료함
 -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유산세 감면 혜택을 2012년까지 종료하고, 2013년부터는 2009년까지 적용하였던 세율로 회귀함
 - 이러한 감세 혜택 종료로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고소득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차감 규정 개정
- 고소득 납세자의 AGI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투자관련 이자, 재해손실 및 도박손실을 제외한 항목별 공제 합계액의 28%를 항목별 공제총액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적용될 것이며 이 제도의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3,21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기책임세 도입 제안
- 긴급구제금융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대형은행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제안
 - 부과대상
 - 전 세계 연결 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금융기관
 -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은행과 저축은행 지주회사, 중개기관, 부모예금기관, 연방예금공사가 보증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를 의미함
 - 계산방식
 - 과세표준은 금융기관의 총자산에서 투기 성격으로 볼 수 없는 안전자산(즉, 자본금, 연방예금공사가 보증한 예금과 소기업에 대한 대여금 등)을 차감해 계산함
 - 해당 금융기관은 부채의 0.075%(장기부채, 안전자산의 경우 적용 비율 감소)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

- 조세회피 규정 및 비효율적인 세법 규정의 개정 및 폐지
 - 전문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 방지
 - 투자에 참여한 헤지펀드 매니저를 포함한 전문투자자 등이 지급받는 파트너십 이자 수익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하여 현행 세법상 자본이득세율을 적용시킴
 -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투자자 등의 파트너십 이자수익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으로 판단하여 개정세법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이 제도의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150억달러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표 1-4〉 세법개정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단위: 백만달러, %)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2012 -2016	2012 -2021
고소득 가정에 대한 감세혜택 종료	-	-6,000	-36,000	-64,000	-78,000	-94,000	-108,000	-121,000	-134,000	-149,000	-163,000	-278,000	-953,000
고소득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개정	-	-6,008	-18,996	-26,418	-29,766	-32,696	-35,699	-38,644	-41,496	-44,388	-47,180	-113,884	-321,291
금융위기책 임세의 도입	-	-	-1,000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4,000	-4,000	-10,000	-30,000
전문투자자 에 대한 조세혜택 방지	-318	-2,274	-2,123	-2,154	-1,927	-1,608	-1,322	-1,089	-908	-762	-640	-10,086	-14,807
석유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 폐지	-6	-3,608	-5,582	-5,094	-4,850	-4,841	-4,690	-4,448	-4,334	-4,333	-4,411	-23,975	-46,191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 석유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 폐지
 - 석유, 가스 및 석탄 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을 폐지함
 - 이 제도의 개정으로 46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기타 세법규정의 변화
 - 양수된 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증법 규정 개정, 납세자가 법률 위반으로 부담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배제 확대 적용 및 특정 보험회사와 상품의 세무처리 방법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4) 보다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구축

- 납세자들이 쉽게 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법을 쉽고 단순하게 개정하는 11개의 새로운 방안²⁵⁾을 제시함
 - 납세자들이 조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납세 신고를 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정부가 세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징수해야 할 세금과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금 간의 차이인 조세격차(Tax Gap)를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함
 - 법인의 신고항목 확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납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중죄(felony) 규정, 온라인 신고항목 누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유산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자산평가 방법 개정, 세대이전 생략과세의 기간 제한 등의 개선안이 포함됨
- 효율적인 조세행정 개선을 위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세금 신고시 사용되는 온라인 시스템의 현대화 등의 방식들을 도입함

25) (1) 자동차 판매자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청구 허용 (2) 5만달러 이하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MRD(Minimum Required Distribution)원칙 삭제 (3) 개인퇴직연금계좌의 60일 이내 Roll-over 허용 (4)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에 주식매도로 인한 미인식 이득 과세의 예외규정 개정 (5) 비적격우선주(Non-Qualified Preferred Stock) 지정 폐지 (6) "Fractions Rule"의 폐지 (7) 주식 공개 부동산투자 신탁회사에 대한 Preferential Dividend Rule의 폐지 (8) 민간재단의 투자수입에 대한 소비세 개정 (9) 투자거래 제한규정에 대한 단순화 (10) 독신가구의 저당채권 설정요건 단순화 (11) 정부 채권에 대한 민간사업 제한규정의 간소화

〈표 1-5〉 쉽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적자 증가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12 - 2016	2012- 2021
세법단순화 (Simplify the tax code)	-16	-7	-35	12	23	-141	-147	281	176	107	138	-148	-407
Tax Cap 감소와 제도 개선	-21	-563	-821	51,234	-6,350	-51,278	-2,176	-2,375	3,029	-8,473	-3,125	-7,778	-20,898

주: 음수는 재정적자 감소를 의미함

자료: <http://www.whitehouse.gov/omb/budget/Overview> 참조

나. 미국 국세청 2011년 추진정책

[조세동향 11-08]

1)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의무화

- 2009년 발표한 세법규정에서 2011년부터 개인소득세를 신고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를 의무화 하였고, IRS는 최근 이와 관련된 전자신고 면제 사유 등을 포함하는 세법규정을 발표함
 - 2011년 중 100건 이상의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신고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의무규정이 적용됨
 - 전자신고 의무규정은 2012년부터 10건 이상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임
 - 전자신고 적용대상 세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자신고 의무 불이행 세무신고 한 건당 100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전자신고 거부사실을 입증하거나 전자신고 관련 전산오류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등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의무를 면제함

2)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2차 역외소득 특별자진신고

- IRS는 개인납세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해외 은닉재산을 자진신고·납부하는 ‘제2차 역외소득 특별자진신고 방침’을 발표함
 - 최근 IRS는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 및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은닉한 역외소득을 자진신고할 의사가 있는 개인납세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역외 재산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형사소추나 더 높은 벌과금의 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진신고 납세자는 2003년부터 2010년 동안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최고 8년간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해외 은행계좌 잔액의 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함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5%보다 낮은 5%를 적용받고, 소규모 해외계좌에 대해 12.5%의 벌금을 적용함
- 2009년 제1차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자진신고기간 동안 약 15,000건이 자진신고·납부되었으며, 1차 자진신고기간 이후 현재까지 3,000건의 추가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음
 -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최근 6년간 발생한 역외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고 20%의 벌금을 추가 납부하였음

3) 세무대리인의 자격검증 강화

- IRS는 비전문 세무대리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신고 오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세무대리인이 IRS에 등록하고 고유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를 부여받도록 하였음
 - 2011년 신고분부터 본 규정이 적용됨
 - IRS는 전문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변호사, 등록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비전문 세

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세무대리를 허용해 왔으며, 그 결과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비전문 세무대리인뿐만 아니라 전문 세무대리인도 IRS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2011년 9월부터 비전문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및 세무대리인 의무 교육이 수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2011년 9월 이후 비전문 세무대리인이 PTIN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IRS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매년 15시간 이상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법(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의 세부규정 발표

[조세동향 11-09]

□ IRS는 최근 2013년부터 적용 예정인 FATCA의 제2차 세부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IRS 신고대상 예금의 확인절차, 30% 원천징수세 적용대상 소득의 범위, IRS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s)의 종류와 IRS에 보고할 항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2010년 제정된 FATCA에 따라 해외금융기관은 2013년 이전까지 IRS와 이행합의를 체결하고 미국납세자의 예금 정보를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함
- 이번 발표한 제2차 세부규정은 앞서 발표한 2010년 제1차 세부규정 내용을 보완·구체화하였음

□ 이번 발표한 예금확인 절차에 따라 해외금융기관은 보유예금을 IRS 보고대상인 미국납세자의 예금(US accounts), 미확인 예금(recalcitrant accounts)²⁶⁾과 IRS 보고의무 배제 대상인 미국납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예금(Non-US accounts)으로 구분함

26) FFIs의 예금이 미국납세자 소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예금주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예금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등 예금을 미확인 예금으로 분류하고 IRS에 보고함

- 해외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통해 예금주가 미국납세자임이 확인되면 이를 US accounts로 간주함
 - 해외금융계좌 이행합의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예금잔액이 50,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Non-US accounts로 간주함
 - 해외금융기관은 프라이빗 बैं킹(Private Banking: PB)의 예금주가 미국납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터넷과 문서를 이용하여 성실한 검토절차를 수행해야 함
 - PB 예금주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태어난 자, 미국에 거주하는 자, 우편주소지가 미국에 있는 자, 펀드를 미국 내 계좌에 이체하도록 설정하고 있는 자, 금융거래 통제권을 미국에서 행사하는 자, 위임장 또는 우편상 주소지가 미국에 있는 자에 해당하면 US accounts로 간주함
 - 해외금융계좌 이행합의 체결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예금 잔액이 500,000달러 이상이면 PB와 동일한 성실한 검토절차가 요구됨
- 제2차 세부규정에서는 30%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는 특정 지급액(passthru payment)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제시하였음
- FATCA에 따르면 신고의무 이행 해외금융기관(participating FFI)은 자신들이 신고의무 미이행 해외금융기관(non-participating FFI)이나 미확인 예금주(recalcitrant account holder)에게 지급하는 특정 지급액(passthru payment)에 대해서는 30% 세율²⁷⁾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특정 지급액(passthru payment)이란 신고의무 미이행 해외금융기관이나 미확인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이자, 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원천징수대상 지급액(withholdable payment)과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지급액의 일정 비율(passthru payment percentage)을 합한 금액임
 - 여기서 일정 비율(passthru payment percentage)이란 최근 4분기 동안의 특정 시점에서 신고의무 이행 해외금융기관의 총자산의 합계 대비 동 기관의 미국투자자산의 합계 비율임

27) 현행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자산에 투자하고 지급받는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은 3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해외금융기관은 미국투자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은 해외금융기관은 미국투자자산 비율이 100%인 것으로 간주함

- 이번 발표를 통해 IRS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외금융기관(Deemed Compliant FFIs) 대상을 제시하였음
 - Deemed Compliant FFIs는 US accounts를 보유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확인받은 금융기관이며, 이들 금융기관은 해외금융계좌를 IRS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IRS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매 3년마다 IRS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Deemed Compliant FFIs 대상은 일정요건을 만족한 지역은행(certain local banks), 신고의무 이행 FFIs의 관계회사인 금융기관(local FFI members of participating FFI groups), 투자기구(certain investment vehicles)와 해외 연금저축(Certain Foreign Retirement Plan)임
 - 지역은행(Certain local bank): 그룹 내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고, 해외투자 및 비거주자와 신고의무 미이행한 해외금융기관의 금융투자를 제한하고 해외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의미함
 - 신고의무 이행 FFIs의 관계회사인 금융기관(local FFI members of participating FFI groups): 해외 영업을 하지 않고, 비거주자의 예금투자를 제한하며 보유 예금이 US accounts로 확인되면 그룹 내 신고의무 이행 해외금융기관에게 해당 계좌를 이양하거나 계좌를 폐쇄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함
 - 투자기구(certain investment vehicles): 직접투자자가 IRS 신고의무 이행 해외금융기관, Deemed Compliant FFIs와 IRS 보고의무 면제대상(외국정부와 중앙은행 등)인 펀드를 말함

- 이번 발표에서 해외금융기관이 IRS에 보고할 항목 중 예금잔액을 연도 말 잔액으로 변경하였으며 보고대상 총수입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해외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성명, 주소, 납세자번호, 연도 말 예금잔액(당초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이었으나 변경), 예금을 통해 지급 또는 인출된 소득(이자, 배당, 기타소득), 예금을 통해 지급 또는 인출된 자산 매각대금 정보를 IRS 보고함

라. 미국 전자행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1-13]

- 전자세정 자문위원회(the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Advisory Committee, ETAAC)는 전자신고율 80%를 목표로 미국 국세청의 전자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전자세정 자문위원회는 1998년 국세청의 구조조정과 개혁에 관한 법률(The Internal Revenue Service Restructuring and Reform Act)에 따라 구성된 후 미국 국세청의 전자신고 및 전자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1) 전자세정 현황 및 정책

- 미국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1년 전자신고율은 전년도보다 6% 증가한 66%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개인소득에 대한 전자신고율은 77%로 예상됨
 - 주요 세무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현황은 2009년 57%, 2010년 60%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근로소득에 대한 전자신고 이행률은 24%로 전자신고 목표치인 8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전자신고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표 I-6>에 따르면 개인소득에 대한 전자신고율은 2011년까지 80%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국세청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전자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전자신고 의무대상인 세무대리인의 범위가 2011년 개인소득세를 100건 이상 신고하는 자에서 10건 이상 신고하는 자로 확대 적용됨

〈표 1-6〉 2010년과 2011년 주요 세무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율

(단위: 천건, %)

신고 종류	2010년			2011년			증감률	
	총건수	전자 신고 건수	전자 신고율(%)	총건수	전자신고 건수	전자 신고율	전자 신고 건수	전자 신고율
개인소득	140,403	98,100	70	141,123	109,102	77	11,002	7
근로소득	28,924	6,653	23	28,982	6,891	24	238	1
법인소득	6,456	2,188	34	6,538	2,497	38	309	4
파트너십	3,597	1,271	35	3,798	1,415	37	143	2
신탁	3,056	854	28	3,067	1,122	37	269	9
비영리단체	595	126	21	607	163	27	37	6
합계	183,031	109,192	60	184,113	121,190	66	11,998	6

자료 : 2011 IRS Annual Report, p.3, 2011. 6.

- 전자신고 오류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오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한 납세자가 서면신고하지 않도록 전자 신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2011년부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던 신고안내문의 발송을 중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전자신고를 독려할 것임

2) 2011년 이후 전자세정의 추진 과제

- 2010년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전자신고 서비스 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세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집중하며, 민간사업자(시스템 개발사업자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세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첫째, 전자신고 서비스 시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국세청은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미국 국세청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유 무역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에 따라 정보보안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프로그램의 작동을 계속해서 감시·감독해야 함
 - 미국 국세청은 전자신고 오류 발생을 줄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사업자 등 민간의 이해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의해야 함

- 둘째, 국세청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전액 지원받고 전자신고 프로그램(Modernized e-File, MeF)²⁸⁾ 개발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임
 - 2012년까지 128개 서식을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추가하고 2013년까지 수정신고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 전자신고율의 증가, 전자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전자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세청 문의의 감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신고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과 민간개발사업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전자신고 오류로 인해 전자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비율이 15~20%로 분석되었으며 전자신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오류를 개선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
 - 조사 결과 15가지의 오류가 전체 오류 발생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자신고 프로그램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정형화된 오류를 개선해 나가야 함
 -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전자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주, 근로소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와 납세대리인과 계속해서 협의해야 함

- 셋째,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미 신고한 정보를 검색하고 세금을 자동 계산하여 신고할

28) MeF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기존 전자신고 프로그램과 비교해 오류 코드에 대한 설명방식을 개선(다른 서식과 비교하고 오류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함)하고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납세자 정보보호 기능을 개선하고, .pdf와 같은 형식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납부 프로그램과 통합이 가능함. 또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을 철회할 수 있는 기능 등 기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던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임

수 있는 전자신고 간소화(Simple return)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민간 시스템 개발사업자 등과 협력해야 함

- 전자신고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자금의 확보와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사전 논의가 필요함
-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전자신고 시스템의 작동이 정지된 사례가 있었고, 영국은 최근 전자신고 프로그램의 계산오류로 600만명이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한 사례가 있었음

2. 캐나다

가. 캐나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조세동향 11-03]

- 캐나다 재무부는 2010년 12월 16일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관한 소득세법(Income Tax Act)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캐나다에서는 신탁회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으나, 신탁회사 중 부동산임대 등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세하고 있지 않음
 - 신탁회사가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함
 - 첫째, 비적격 자산²⁹⁾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둘째, 한 과세연도 동안 수입의 95% 이상이 적격출처(qualified source)³⁰⁾에서 발생

29) 적격자산은 부동산(real or immovable properties)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관련 회사 등에 대한 유가증권(securities)을 말함

30) 여기서 적격출처라 함은 다음의 5가지를 의미함. ①부동산 자산의 임대수입(rent from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②이자(interest), ③부동산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 from dispositions of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④배당(dividends), ⑤로열티(royalties)

하여야 함

- 셋째, 한 과세연도 동안 수입의 75% 이상이 특정 출처³¹⁾에서 발생하여야 함

-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적격요건들을 완화하고, 적격요건을 보다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적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
 -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비적격 자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비적격 자산을 10% 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의 95% 이상이 적격출처에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총수입의 90% 이상이 적격출처(unqualified source)에서 발생하도록 규정함
 -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자회사는 부동산투자 활동에 있어서 임대목적 외에도 재판매 등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적격요건상 수입(revenue)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함
 -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의 정의규정에서 사용되는 수입(revenue)은 총소득을 의미하며, 자본이득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명확히 함

나. 캐나다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1-07]

- 재무부가 2011년 3월 22일 발표한 2011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기존의 감세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기존 Canada's Economic Action Plan(CEAP)을 유지할 계획이며, CEAP 2·3차년도 경기부양책으로 CAD284억 지출이 예상됨

31) 여기서 특정 출처라 함은 다음의 3가지 경우를 말함. ①부동산 자산의 임대수입(rent from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②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또는 저당권에 대한 이자(interest from mortgages, or hypothecs on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③부동산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 from dispositions of real or immovable properties)

- 2010-11년 경상수지는 CAD405억을 기록하여 2009-10년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향후 CEAP의 종료로 적자폭이 계속 감소하여 2015-16년 CAD42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은 2011년 7.5%에서 향후 5년간 6.5%로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은 2011년 2.4%에서 향후 5년간 2% 정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7〉 Canada's Economic Action Plan에 의한 재정지출 규모
(단위: 백만CA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2009-10	2010-11	2011-12	
세부담 감소	3,020	3,180	0	6,200
실업자 지원	3,348	4,924	0	8,27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6,031	8,108	683	14,822
미래 지식경제 구축 및 더 나은 일자리 창출	1,550	2,024	251	3,824
산업 및 지역사회 지원	10,979	2,261	0	13,241
연방정부 재정지출 합계	24,928	20,497	934	46,359
주정부 재정지출 합계	7,062	5,956	1,016	14,033
CEAP에 의한 재정지출 총합	31,989	26,453	1,950	60,392

자료: 캐나다 재무성, Budget 2011 A Low-Tax Plan for Jobs and Growth, 2011. 3. 22, p. 44

1) 개인소득세 개정안

- 어린이 예능활동비 세액공제(Children's Art Tax Credit)제도와 가족 돌봄자 세액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제도를 신설함
 - 어린이 예능활동비 세액공제는 1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문화, 예술, 레크리에이션 활동비용의 15%를 공제하는 제도이며, 공제가능 비용의 한도를 자녀 1인당 CAD500으로 제한함
 - 가족 돌봄자 세액공제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배우자, 동거인, 자녀를 포함)을 다른 가구원이 돌보는 경우 1인당 CAD2,000의 15%인 CAD300을 공

제하는 제도임

- 현행 시행중인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등 피부양자에 대한 세액공제(dependency-related credits)와 중복 적용할 수 있음

□ 의료비용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부모, 형제 및 재정적 부양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공제 한도 규정을 폐지함

- 현행 규정상 본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 규정이 없지만 부모, 형제 및 재정적 부양자에 대해서는 CAD10,000의 한도가 있었음

□ 양육비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공제대상을 확대함

- 현행 규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양육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이 때 1주택에 2가구 이상의 다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그 중 한 가구만이 양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음
- 1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 세액공제의 혜택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별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함

□ 자원봉사 소방관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를 신설함

-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한 자에게 연간 CAD3,000의 15%만큼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동 세액공제제도는 소방활동 사례비 중 CAD1,000을 감면하는 현행 규정과 중복적용이 배제됨

□ 교육비 세액공제(Tuition Tax Credit) 대상항목에 자격증 시험수수료 등을 추가하고, 교육비와 교재비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Tax Credits)의 적용대상 중 해외대학 교육비의 범위를 확대함

- 자격증 시험수수료와 관련비용(시험자료, 수수료발급비용 등 포함)의 연간 지출액이 CAD100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됨
- 연속된 13주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대학에서 교육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적용하던

교육비와 교재비 세액공제를 교육기간이 3주 이상인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함

- 부당한 소득분할을 제한하기 위한 소득분할 제한규정(Tax on Split Income)³²⁾의 적용 대상에 자본이득을 포함함
 - 자본이득에 대해 소득분할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본이득은 배당으로 간주되어 29% 세율로 과세되며,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생애자본이득공제(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를 받을 수 없음
- 납세의무자가 본인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배제함
- 납세의무자와 정상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은 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제한함
 - 납세의무자는 동 주식을 기부받은 단체가 5년 내에 주식을 처분하면 그 처분하는 시점에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2) 법인소득세 개정안

- 고용증대를 위해 소기업에 대한 임시 고용증대세액공제(Temporary Hiring Credit for Small Business) 제도를 신설함
 - 소기업이 2011년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2010년 납부한 고용보험료보다 증가한 경우 그 차이 금액을 CAD1,000까지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입한 기계장치에 적용하는 가속상각 규정을 2년 연장함
 - 판매·리스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입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제품을

32) 고소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Split Income)하는 경우 29%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한 제도임

생산하는 경우, 정액법 50% 비율로 가속상각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연장하여 2014년까지 구매하는 기계장치에도 계속 적용함

- 기존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³³⁾ 제도의 적용대상 설비에 주 에너지원이 폐열인 전기에너지공급설비를 추가함
- 오일샌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본비용의 상각률을 현행 30%에서 10%로 감소하는 방안을 제안함
- 신규 오일샌드 개발비용을 현행 세법에서는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유 및 가스산업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매년 30% 비율로 상각하는 방안을 제안함
- 투자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적격 환경 투자신탁(Qualifying Environmental Trusts, QETs)의 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QETs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함
 - 예산안에서는 파이프라인 운영사가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관련 법규에서는 광물 운영회사, 폐기물 처리회사 등이 채석장 또는 폐기물처리장 등의 복구비용 발생에 대비할 목적으로 신탁회사를 설립·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신탁회사의 투자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 2009년 관련 법규에서 파이프라인 운영사도 추후 파이프라인 매립공사에 투입될 비용에 대비하기 위해 신탁회사의 설립을 의무화하였음
 - 이에 예산안에서는 파이프라인 운영사에도 QETs 규정을 적용하여 투자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제안함
 - 현행 세법상 QETs의 투자대상을 현금, 정기예금, 정부채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담보부증권과 특정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함

33) 자본비용공제제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에너지원 재사용 목적의 청정에너지생산설비 및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50%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제도임

- 투자회사의 과세기간과 파트너십의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파트너십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투자회사의 과세기간으로 안분하여 인식하도록 기존 제도를 변경함
 - 현행 세법에서는 투자회사가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수익의 수익인식 시기는 해당 파트너십의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트너십 사업연도가 투자회사 사업연도 이후 종료하는 경우 파트너십 수익이 1년간 과세이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시함

3) 기타 주요 개정안

-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무역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세법 간소화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함
 - 관세 개정안은 크게 관세행정절차 간소화, 관세가격표 재정비, 관세가격표 중 실효성 없는 항목의 삭제 및 필요항목의 추가를 위한 방안으로 구분됨
 - 또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수입된 저가(CAD500) 수입품에 적용하던 관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단, 이러한 간소화 방안은 비영리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만 적용될 예정임
- 법정 기부단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국세청이 일반에 공개한 적격 기부단체 리스트에서 단체명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적격 기부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적격 기부단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적격 기부단체는 기부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II 유럽

1. 그리스

가. 그리스 세제 개편, 투자촉진법 및 탈세방지법 발표

[조세동향 11-06]

1) 세제 개편

- 그리스 재무부는 2011년 2월 26일 세제 개편을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발표함
 - 동 법률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적용될 예정임
- 법률안은 법인세율 인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주식양도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인세율이 24%에서 20%로 인하됨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0%에서 25%로 인하됨
 - 그리스 Athens 증권거래소 및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주식양도세의 양도세율이 1.5%에서 2%로 인상됨
 - 주식양도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tax)가 도입될 예정임
 - 부가가치세를 3회에 걸쳐 분납하는 규정이 신설됨
 -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총액의 40%를 납부하고 나머지 60%는 이후 2회에 걸쳐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 가능함
 - 월 1%의 지연납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이 법률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함

2) 투자촉진법(investment incentive law)

- 그리스 정부는 특정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보조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촉진법을 공표함
 - 투자촉진법 도입은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기술 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함
 - 건축, 법률 및 회계 서비스, 태양열 전력 생산, 광고 및 해외 투자활동을 제외한 모든 경제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가 적용대상임
 - 투자촉진법 적용대상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소득공제, 현금보조 및 금융리스로 보조 혜택이 제공됨
 - 소득공제: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허용
 - 현금보조: 법률안에 명시된 보조금 지급대상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
 - 금융리스로 보조: 금융리스를 통한 신규자산 취득시 리스료의 일부를 보조

3) 탈세방지법(anti-tax-evasion law)

- 그리스 정부는 2월 21일 탈세방지법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도입하는 정책의 일환임
- 법률안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조세포탈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과 부패 세무공무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인세 75,000유로 또는 부가가치세 150,000유로를 초과하는 세금을 포탈한 조세포탈범을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됨

2.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 고정사업장의 자본배부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조세동향 11-03]

- 네덜란드 조세당국은 2011년 1월 15일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자본배부에 관한 시행규칙(Decree No. 2010/457M)을 발표함
 - 고정사업장의 자본배부 : 지점(고정사업장)의 경우 차입금의 과도한 조달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상 적정한 가상의 자본금 수준을 배부함
 - 고정사업장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 : 고정사업장이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이용하기 위하여 과도한 차입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음

- 시행규칙(Decree No. 2010/457M)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에 대한 자본배부는 자본할당 접근법(capital allocation approach)에 의하여 배부함
 - 자본할당 접근법 :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에 의하여 특정 고정사업장에 배분된 자산(assets owned)과 부채(risk assumed)를 통해 가상의 자본을 동 고정사업장에 배부하는 방법
 - 다만, 회사가 자본조달을 공정가치기준(arm's length basis)에 의해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자본 접근법(thin capitalization approach)에 의해서 배부함
 - 과소자본 접근법이란 차입금을 기준으로 특정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액을 자본으로 분류하는 방법

- 고정사업장에 배부된 자본이 배당소득공제(participation exemption)와 그룹과세제도(group taxation regime)상 주식(share)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정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특정요건 : ① 외국회사가 고정사업장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② 고정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적절한 종업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고, ③ 고정사업장의 사업활동과 고정사업장에 주식이 귀속되는 회사의 사업활동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

나. 네덜란드 연결과세제도에 관한 시행규칙 발표

[조세동향 11-04]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0년 12월 14일에 연결과세제도(또는 재무적 공동체 과세제도, Fiscal Unity Tax Regime)에 관한 시행규칙(DGB 2010/4620M)을 발표함
 - 본 시행규칙(DGB 2010/4620M)은 연결과세제도에 관한 여러 시행규칙을 수정·통합한 것임
 - 본 시행규칙은 2010년 12월 14부터 효력을 발생함

- 연결과세제도는 모회사(Parent company)와 관련 자회사(Subsidiary)의 과세소득을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과세제도임
 - 연결과세제도의 중요 장점은 공동체 구성회사의 손실이 다른 구성회사의 이익과 공제가 된다는 점과 한 구성회사의 자산이 다른 구성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자본이득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임
 - 연결자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① 거주요건, ② 지배요건, ③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거주요건 : 구성회사는 네덜란드에 거주(resident)하거나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함
 - ② 지배요건 : 모회사가 개별 자회사의 발행주식 95%를 법적·경제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③ 신청요건 : 공동체 구성회사는 재무적 공동체(fiscal unity)의 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 재무적 공동체는 연결모회사와 연결자회사를 모두 포함하며, 과세소득의 신고단위가 되는 실체를 말함

- 연결과세제도에 관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매입선택권(call option right) 부여, 담보로 제공된 연결자회사 주식, 잠재적 청산손실(latent liquidation losses)에 관한 사항이 있음

1) 주식매입선택권(call option right) 부여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가 아래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무적 공동체(fiscal unity)’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이 미래에 실행된다면 지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재무적 공동체’의 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을 확인함
 - 여기서 특정한 요건이란 신규발행주식 관련성 등 다음과 같음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가 연결자회사의 신규발행주식과 관련 있어야 함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가 재무적 공동체의 사업활동과 관련 있어야 함
 - 주식매입선택권이 미래에 항상 실행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함
 - 연결모회사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2) 담보로 제공된 연결자회사 주식

- 연결모회사가 보유한 연결자회사의 주식을 은행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때 연결모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담보권자에게 부여된 추가적인 권리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을 경우에만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담보권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의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적 공동체의 구성이 불가능하게 됨을 분명히 함

3) 잠재적 청산손실(latent liquidation loss)

- 연결자회사의 보유 주식 중 잠재적으로 청산이 예상되는 주식의 경우, 그 주식의 청산

손실은 그 주식을 보유한 연결자회사에 귀속될 재무적 공동체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잠재적으로 청산이 예상되는 주식이란 재무적 공동체에 포함되는 시점에 연결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①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이 중단된 경우, 또는 ② 사업이 중단되기로 결정된 경우의 주식을 의미함
- 이 규정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내재하는 청산손실이 재무적 공동체의 전체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

다. 네덜란드의 ‘세제정책보고서’ 발표

[조세동향 11-10]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1년 4월 14일 세제정책보고서를 발간함³⁴⁾
 - 세제정책보고서는 현재의 세법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세제전문가들은 세원 확대를 통한 세율(개인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 인하를 기대하고 있음
 - 세제정책보고서에 대한 입법적인 개정안은 연말 이후에 제시될 예정임
- 세제정책보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검토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인세의 주요 검토내용은 법인세율의 인하, 외국투자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부채 조달을 통하여 네덜란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의 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 PE) 소득에 대한 면제임
 - 소득세의 주요 검토내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축소를 위한 연구, 현재의 누진세율인 33%, 42%, 52%를 각각 30%, 40%, 50%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경영자 활용을 위한 집약화, 특별 최저세율 도입에 대한 연구임
 - 부가가치세의 주요 검토내용은 부가가치세의 저세율인 세율 6%를 8%로 인상, 19%의 부가가치세율의 도입 가능성 조사, 무알코올 음료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 소

34) “De Fiscale agenda Naar een eenvoudiger, meer solide en fraudebestrijding belastingstelsel”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규정의 개정임

- 현재 규정은 1역년 과세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1,88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소기업의 기준을 부가가치세 총액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유명무실한 세제인 포장세(packaging tax) 등에 대한 폐지를 고려하고 있음
- 폐지가 고려되고 있는 세제로는 포장세(packaging tax), 물세(water tape tax), 토지 물세(ground water tax), 낭비세(waste product tax)가 있음

□ 법인세의 주요 검토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법인세율 인하

- 현재 법인세율 25%를 24%로 인하하고자 함
-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만 법인세 세율을 확장하여 세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법인세율은 감소시키면서도 다른 조치를 통해서 세수를 마련하는 안을 제시함

2) 인수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제한

- 현행 네덜란드 세법에 의하면, 동일체인 인수회사의 이자비용을 피인수회사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실질적인 동일체인 경우에 피인수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회사가 부담한 부채의 이자비용을 피인수회사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부채를 조달하여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공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인수회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피인수회사의 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음
 - 또한 부채/자본비율(debt-to-equity ratio)이 일정률을 넘지 않으면, 500,000파운드 이하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함
 - 일정률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부채 대 자본이 3대1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이자공제의 제한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연구의 결과가 6월 14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3) 국경과세시스템(territorial tax system)

- 현행 네덜란드 세법에 의하면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 만약 네덜란드 납세자가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 고정사업장의 소득은 네덜란드 납세자의 전 세계 소득에 포함됨
 - 현재에는 네덜란드 납세자가 네덜란드에 100의 이익과 국외 고정사업장(PE)에 40의 손실이 있다면 법인세는 60에 대하여 발생하고 국외 고정사업장(PE)에 향후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은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됨

-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완전한 국경과세시스템(territorial tax system)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함
 - 국경과세시스템(territorial tax system)에 의하면 외국의 고정사업장의 실적이 네덜란드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국외 고정사업장(PE)에서 발생한 손실은 네덜란드 납세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음

- 이와 관련한 EU법은 국외 고정사업장(PE)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외 고정사업장(PE)의 최종적인 중단 시점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책보고서는 과도기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국외 고정사업장(PE)의 이익을 면제로 재분류함에 따른 국외 고정사업장(PE)의 손실은 과도기적인 규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라. 네덜란드의 기능통화 과세제도 관련 시행지침 발행

[조세동향 11-13]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2011년 5월 19일에 세무목적상 기능통화 적용에 관한 승인요건을 명확히 하는 시행지침인 Decree No. BLKB2011/392M of 11 May 2011을 발표함
 - 본 시행지침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세무목적상 기능통화의 적용에 관한 시행지침(Decree No. BLKB2011/392M of 11 May 2011)은 명확하지 않았던 기능통화 승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지침을 제시함
 - 네덜란드 법인세법(CITA) 제7(5)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소득의 계산에 유로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받을 수 있음
 - 하지만 네덜란드 과세관청은 기능통화 승인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음
- 본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능통화의 사용을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기능통화 승인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기능통화 승인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능통화로 표시된 계정의 정당성이 납세자의 실제 해외사업 활동이나 당해 기업집단의 여러 국가나 대륙에 걸친 활동으로 입증되어야 함
-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가 동일한 기능통화를 사용하여야 함
- 2011년 1월 1일 이후,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에서 결정하는 Euro foreign exchange rate을 사용하여야 함
- 법인세 납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회계연도의 과세소득은 당해 연도의 평균환율에 의해서 Euro로 전환되어야 함

3.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의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1-12]

- 뉴질랜드 재무부는 예산 적자(167억뉴질랜드달러 상당)를 감소하기 위하여 조세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2012년 예산안을 2011년 5월 19일에 의회에 제출하였음
- 예산안의 주요 세제조치는 법인세율의 인하(30%에서 28%로) 등을 포함함
 - 법인세율 인하 외의 주요 세제조치로는 퇴직저축제도(KiwiSaver scheme)의 변화, 근로장려세제(Working for Families Scheme)의 공제 축소, 외국인 소유 은행에 대한 새로운 과소자본세제가 포함됨
 - 주요 세제검토로는 혼용자산(mixed-use assets)에 대한 과세조치의 검토, 생물 재고(livestock)의 평가를 선택하는 조치의 검토, 현물혜택(non-cash benefits)에 대한 과세조치의 검토가 있었음

1) 퇴직저축제도(Kiwisaver scheme)의 변화

- 'KiwiSaver'는 납세자가 은퇴에 대비하여 저축하는 것이며³⁵⁾ 이 제도를 통한 납세자의 저축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고용주가 납세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납세자가 미리 신청한 율³⁶⁾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이를 'KiwiSaver Scheme'에 투자함
 - 이렇게 투자된 자금 및 투자수익은 납세자의 퇴직 대비 자금이 됨
- 퇴직저축제도(KiwiSaver)와 관련된 세제혜택이 축소됨

35) <http://www.kiwisaver.govt.nz/new/about/>

36) 2%, 4%, 8%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세제개정안에 따르면 최소적립비율을 2%에서 3%로 인상하게 됨

- 2011년 6월부터 세액공제가 반으로 줄어들음
 - 최대 세액공제가 1,042뉴질랜드달러/년에서 521뉴질랜드달러/년으로 인하됨
 - 2012년 4월부터 고용주 기여분에 대해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세(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ESCT)가 부과됨
 - 2012년 4월 이전에 고용주 기여분은 과세면제였음
 - 고용주 퇴직연금 기여세(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ESCT)는 종업원 한계세율로 과세됨
 - 2013년 4월부터 고용주와 종업원의 최소기여분이 2%에서 3%로 인상됨
 - 종업원은 종업원 기여분으로 4%나 8%를 선택할 수 있음
- 이러한 세제조치로 인하여 뉴질랜드는 4년에 걸쳐 26억뉴질랜드달러의 조세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근로자보조제도(Working for Families Scheme)의 혜택 축소

- 근로자보조제도(Working for Families)는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³⁷⁾
-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을 축소함
- 보조금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소득기준을 36,827뉴질랜드달러에서 35,000뉴질랜드달러로 낮춤
 - 이 조치를 통하여 더 적은 소득수준에서 보조금이 감소되기 시작하므로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이 적어짐
 - 보조금이 감소되는 비율도 높아짐
 - 일정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보조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보조금이 감소되는 비율이 초과소득에 대한 뉴질랜드달러당 20센트에서 25센트로 인상함

37) <http://www.workingforfamilies.govt.nz/>

- 이 조치를 통하여 초과소득이 동일한 금액일 때 감소되는 보조금이 더 커짐
- 이 조치는 1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FTC)를 13세 이상 1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가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 FTC)와 동일하게 축소하는 것임

□ 이 조치는 2012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4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임

□ 이러한 세제조치로 인하여 뉴질랜드는 4년에 걸쳐 448백만뉴질랜드달러의 조세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외국인 소유 은행에 대한 새로운 과소자본세제

□ 외국인이 소유한 은행에 대하여 최소자본비율(minimum prescribed percentage of equity)을 4%에서 6%로 인상함

- 2012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임
- 이러한 조치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비은행 다국적기업의 과소자본세제규정의 변화를 따른 것임

□ 최소자본비율이 4%에서 6%로 인상되면 외국인 소유 은행의 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이 더욱 제한됨

□ 이러한 세제조치를 통하여 뉴질랜드는 2012년에 28백만뉴질랜드달러, 이후에 매년 31백만뉴질랜드달러의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4) 기타 과세조치에 대한 검토

- 업무 용도와 사적 용도로 동시에 사용하는 혼용자산에 대한 과세조치를 검토함
 - 요트와 별장과 같은 고가자산을 혼용자산으로 쓰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과대하다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었음

- 생물 재고(livestock)의 평가규정 선택조치를 검토하였는데, 현재 생물 재고의 평가규정 선택조치에 의하면 농부는 두 가지의 평가방법 중 하나로 생물 자산을 평가할 수 있음
 - 두 가지 방법은 herd scheme과 national standard cost scheme임
 - herd scheme은 재고자산의 원가가 생물자산군별로 결정되고, national standard cost scheme은 전체 원가의 평균으로 결정됨
 - 농부는 세무 목적상 유리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나의 평가방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
 - 그 결과 시장가치가 증가되어도 과세되지 않고 시장가치가 감소될 때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 현물혜택(non-cash benefits)에 대한 과세조치도 검토함
 -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등을 검토하면서 이익을 재정의함
 - 이익의 범위에서 현물혜택(non-cash benefits)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함

4. 독일

가. 독일 2011년 조세간소화법안 채택

[조세동향 11-04]

- 독일 연방내각(Federal Cabinet)은 2011년 2월 2일 ‘2011년 조세간소화법안(2011 Tax Simplification Act)’ 을 채택함
 - 이는 납세자 편의도모 및 조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세법 적용요건과 세부규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법안은 독일 연방의회(Federal Parliament)의 승인을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1) 적용요건의 간소화

- 법안은 자녀양육비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에 적용되던 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적용요건을 간소화함
 - 자녀양육비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적용되던 인적요건을 폐지함
 - 자녀의 연간소득이 8,004유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폐지함
 - 천재지변에 대한 기부금에 적용되는 자료제출요건을 완화함

2) 적용방법의 간소화

- 법안은 통근비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고, 소득세의 신고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용방법을 간소화함
 -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산정되던 통근비의 산정방식을 간소화함
 - 납세자가 2년 단위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함

3) 공제한도의 인상

- 법안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현행 920유로에서 1,000유로로 인상함
 - 다른 법안과 달리,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은 2011년도부터 적용이 확정됨

나. 독일 조세간소화법 입법추진

[조세동향 11-08]

- 독일의 연립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조세간소화법(안)이 2011년 3월 18일에 의회에 제

출되어 검토중임

- 법(안)은 2011년 7월에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법(안)은 주로 개인납세자의 세무신고절차의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짐
 - 특히 서류에 기반하는 절차를 IT에 기반하는 절차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조세간소화법(안)을 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에 관련 사항으로 구분하여 아래에서 설명함

1) 사업자 관련 사항

- 개정 법(안)에서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정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서명을 포함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특정한 전자서명을 포함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함
 - 유효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란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함
 - 개정 법(안)에 따르면, 유효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VAT invoice)는 전자서명 없이 전자적으로 발송될 수 있음
 - 따라서 E-mail이나 E-mail에 첨부된 전자문서-예를 들어, PDF 문서-는 전자서명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유효한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음

- 개정 법(안)은 법적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답변(tax ruling)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함
 -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적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답변을 신청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해당 건(matters)이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결정됨
 - 개정 법(안)에 따르면, 해당 건의 평가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법적 구속력 있는 세법해석 답변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정 법(안)은 사업소득자와 관련 있는 다른 신고사항을 간소화함

- 현행 법률에 따르면, 독일의 납세자는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거나 파트너십이나 독일에서 설립되지 않는(not resident)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관할권을 가진 독일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개정 법(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거나 파트너십이나 독일에서 설립되지 않는(not resident)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역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는 신고사항이 발생한 역년이 종료한 이후 5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됨
- 개정 법(안)은 주주투입자본 계정의 변화가 있던 연도에만 주주투입자본 계정을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함
 - 주주투입자본 계정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회사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나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임
 - 주주가 투입한 자본은 세무 목적상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 이는 주주투입자본의 배분을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금에서 배제하기 위함
 - 현행 법률에 따르면, 배당금의 원천이 이익(profit)이 아니라 주주가 투입한 자본(capital contribution)인 경우에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주투입자본 계정상 변동이 없더라도 법인은 주주투입자본 계정을 매년 신고하여야 함
 -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주투입자본 계정의 신고를 간소화하여 실제 주주투입자본 계정의 변화가 있던 연도에만 신고하도록 함

2) 일반 납세자 관련 사항

- 개정 법(안)에서는 근로소득자의 표준소득공제 금액을 인상시킬 계획임
 - 근로소득자의 표준소득공제(standard lump sum tax deduction) 금액은 현행 920유로에서 1,000유로로 인상될 예정임

- 개정 법(안)에서는 분리과세되는 자본투자소득을 공제한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소득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인하할 계획임
 -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공복리,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의 업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공법상의 국내법인체, 국내 사무소, 정치, 사회단체, 재단 등에 제공한 기부금(회원의 회비 포함)은 총소득의 20%까지 또는 총매출(turn-over)과 과세연도에 지급한 총급여 합계액의 0.4%까지 특별비용으로 공제 가능함³⁸⁾
 - 또한, 원천징수에 의해 분리과세(definitive withholding tax)되는 자본투자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어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증가시키고 있었음

- 개정 법(안)에서는 개인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격년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개인 납세자가 매년 해야 하는 세무신고의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세무신고를 매년 하도록 함
 - 하지만 얼마나 많은 납세자가 격년 세무신고를 이용할지에 대해 논쟁이 있음

5. 스페인

가. 스페인 2011년 조세관리 운영지침

[조세동향 11-04]

- 스페인 국세청은 2011년 2월 2일 ‘2011년 조세관리에 대한 운영지침’에 승인함

- 운영지침에는 향후 국세청의 조사, 관리, 감독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음
 - 국세청은 특정 분야의 조세포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아래와 같은 분야를 포함함
 - 전문가, 비거주자 등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납세자

38) 김유찬·이유향,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p. 83,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 불법자금
- 납세자의 부당한 세무운영 실태
- 이전가격, 특히 기업구조조정 관련 무형자산의 이전거래 및 손실 이전거래
- 대외무역 및 관세
- 외환자금, 조세피난처 내 발생소득 및 자산에 대한 정보
- 이 외에도 국세청은 조세징수 절차 및 자치단체로 이전된 세금과 관련된 조세회피행위를 관리·감독할 계획임

나. 스페인 지속가능경제법(sustainable economy law) 공표

[조세동향 11-06]

- 스페인 관보(Official Gazette)는 지속가능한 경제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속가능경제법’을 2011년 3월 5일에 공표함
 - 지속가능경제법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공표일의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1) 법인세법

- 폐지 예정이던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 및 확대하고 그룹사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현행 8%에서 12%로 인상됨
 - 2011년에 폐지 예정이던 환경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공제율이 현행 4%에서 8%로 인상됨
 - 그룹 내 그룹사에 대한 변동내역이 존재할 경우 지배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변동내역을 과세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됨
 -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2) 소득세법

-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스톡옵션의 행사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됨

3)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³⁹⁾ 소재의 연금펀드나 투자기관이 수령한 배당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비과세함
 - 과거 유럽연합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비과세 규정이 유럽경제지역 국가로 확대 적용됨
 -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스페인과 해당 국가 간 정보교환 규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정보교환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다. 스페인 게임법 도입

[조세동향 11-12]

- 스페인 관보(Official Gazette)는 2011년 5월 27일 도박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게임세(gam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법(Law 13/2011)을 발표함
 - 명칭은 “게임법”이나 실질적 내용은 도박사업에 대한 규정임
 - 이 법률은 2011년 5월 29일부터 유효함
- 스페인은 1997년 도박사업을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하는 내용의 칙령(Royal Decree Law 16/1977)을 발표한 바 있음

39) 유럽경제지역은 유럽국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블록으로서,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 구성됨.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연합 비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에 속한 국가에 해당됨.

- 기술 발달로 온라인 도박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등 전통적인 도박의 개념이 변경되어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게임법을 제정함
 - 스페인 정부는 법령으로 도박사업을 합법화함으로써 도박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 (legal certainty)을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서비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신설된 게임법은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도박사업자에 대해 게임세와 등록비 등의 제반 관리비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게임법의 적용대상은 도박장,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도박의 종류나 운영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도박사업을 포괄함
 - 단,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도박사업자는 도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state)에서 정식 라이선스 (license)를 취득하고 허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함
 - 게임법을 위반한 도박사업자에 대해서는 1백만유로에서 5천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게임세는 도박 종류별로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되며, 10%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됨
 - 대부분의 도박은 순이익(gross profit)에 게임세가 부과되나, 일부 도박은 매출액 (turnover)에 게임세가 부과됨
 - 스포츠 도박은 매출액에 22%, 경마와 패리뮤추얼(pari-mutuel) 도박⁴⁰⁾은 매출액에 15%의 게임세가 부과됨
 - 위의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은 순이익에 게임세가 부과됨. 다만, 위의 도박이 고 정승률(fixed odds) 방식이라면 순이익에 게임세가 부과됨
 - 자치구별로 해당 자치국 내 도박사업에 대해 세율을 20%까지 인상 가능함
 - 게임세가 부과되는 도박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40) 패리뮤추얼 도박이란 게임에 건 금액을 베팅에 따라 전체 금액에서 관리비의 수수료만 공제하고 되 돌려주는 게임 방식임

- 게임세 이외에도 연 매출액의 1%를 관리수수료(administration fee)로 납부해야 하며, 그 외에도 등록비, 게임시스템 기술보고서 발행비 등의 제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6.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조세동향 11-01]

- 재무부 장관은 2010년 12월 7일에 201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2011 예산안은 재정지출 축소 및 세수확대를 통해 재정결손을 60억유로만큼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예산안에는 정부가 2010년 11월 24일 발행한 4개년 국가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의 제1단계 실행 방안이 담겨 있음
 - 4개년 계획에 의하면 재정결손을 150억유로만큼 축소하여 2014년에는 EU 규정 수준인 GDP의 3% 미만(현행 GDP의 11.6%)으로 줄일 방침임
 - 이와 같은 긴축예산은 최근 발표된 850억유로 규모의 IMF/EU 구제금융 패키지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 조세분야에서는 12.5%의 법인세율은 유지하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구간 하향조정 및 일부 공제항목의 폐지를 통해 세수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1) 법인과세 분야
- 법인과세 분야에서는 예산안의 증세정책 기초와는 별도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12.5%의 세율 유지와 더불어 여러 조세지원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근로및투자촉진제도(Employment and Investment Incentive Scheme)에 따라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사업확장제도(Business Expansion Scheme)의 공제혜택을 확대함
 - 사업확장제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춘 비상장기업의 보통주를 청약한 개인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함
 - 이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
 - 개정안에서는 근로및투자촉진제도에 따라 사업확장제도상의 공제혜택이 적용되는 청약주식 한도액을 인상할 방침임
 - 생애 총한도를 현 2백만유로에서 1천만유로로 인상함
 - 12개월 동안의 기간 한도는 현 1.5백만유로에서 2.5백만유로로 인상함

-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면제를 확대하고 등록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세 저세율을 도입함
 - 2011년 거래를 개시하는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줌
 - 과세면제 금액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기여금(PRSI)⁴¹⁾에 연동하여 조정될 것임
 - 현행 계약세(relevant contracts tax)는 일괄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세무상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임
 - 세무상 등록사업자로서 납세의무 이행 관련 기록이 있는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미등록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함
 -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는 계약세의 운영과 관련하여 월 단위의 환급제도(repayment system) 대신 상계제도(offset system)의 적용을 계획하고 있음

2) 개인과세 분야

- 52%의 최고한계세율은 유지하면서 과세표준 구간 및 특정 세액공제 금액을 약 10%만큼 하향 조정함

41) 근로자당 5,000유로를 한도로 함

- 저축상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11년 1월 1일부터 현 25%에서 27%로 2%p만큼 인상함

- 일부 공제항목을 폐지 및 축소하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함
 - 특정 특허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비과세를 폐지하는 일전의 공지를 재확인함
 - 이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적용됨
 - 수동 투자자(passive investors)에 대해서는 자산 투자 관련 특정 세액공제 및 자본공제의 적용을 제한함
 - 관련 공제혜택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계획임

-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 납부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함
 -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근로소득 중 75,036유로만큼에 대해 4%의 세율로 사회보장기여금을 과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또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세율을 현 3%에서 4%로 인상함
 - 소득세 추가부담금(income levy)과 건강부담금(health levy)을 폐지하고 이를 2011년부터 통합사회부담금(universal social charge)으로 대체하여 부과대상을 확대함

3) 자본세(capital tax) 분야

- 자본취득세(capital acquisition tax)의 과세최저한을 인하함
 - 아일랜드에서는 상속 및 증여시 피상속인 및 수증자를 대상으로 25%의 세율로 자본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 단, 자본취득세는 과세소득금액이 일정 금액⁴²⁾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됨
 - 개정안에 의하면 2010년 12월 8일부터 발생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자본취득세

42) 자본취득세 과세최저한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부모, 자녀 등에 해당하는 경우 414,779유로, 부모, 자녀 외의 직계 가족, 형제, 자매, 조카에 해당하는 경우 41,481유로, 기타의 경우 20,740유로가 적용되고 있음

과세최저한을 20%만큼 인하함

4) 간접세 분야

- 비행기여객세(air travel tax) 세율을 간소화함
 - 현행 제도에 의하면 비행기여객세는 2유로와 10유로의 두 단계 세율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에 의하면 2011년 3월 1일부터 3유로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이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후 재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임

- 도박세(betting duty)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국내에서의 개인간 온라인 및 전화 거래에 대해서도 1%의 도박세를 적용함

나. 아일랜드 2011 재정법 발표

[조세동향 11-11]

-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19일 재정법(Finance Bill 2011)을 발행함
 - 이는 2011 예산안(Budget for 2011)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 여러 세법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세제혜택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1) 연구개발 세액공제 환급 한도 인상

-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환급 한도가 인상됨
 - 현재 아일랜드는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한 내국법인이 당기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한 경우, 초과된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음
 - 환급금액은 ① 해당법인이 지난 10년간 납부한 법인세 누적금액과 ② 당기 사업연도의 미지급 급여 payroll liabilities)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 미지급 급여에는 원천징수제도(pay as you earn, 이하 PAYE)에 따라 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포함됨
- 2011 재정법에서는 PAYE 제도하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이외에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총근로소득세(income levy), 주차세(parking levy)⁴³⁾ 및 보편적 사회부담금(universal social charge, 이하 USC)이 미지급 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또한 당기 사업연도의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전기 미지급 급여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한도를 산정하게 됨
- 이는 환급 한도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지님
- 이 규정은 재정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2) PRSI 부과율의 폐지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징수율 인하

- 주식연계보상(share based remuneration)에 대한 소득비례 사회보험금(pay-related social insurance, 이하 PRSI)의 부과가 폐지됨
 - 아일랜드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징수율을 적용하여 PRSI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함
 - 아일랜드는 2011년부터 근로자가 수령한 주식연계보상에도 PRSI를 부과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사업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와 반발로 2011 재정법에서는 주식연계보상에 대한 PRSI 부과 규정이 폐지됨
 - 다만,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서면 계약서 없이 수령한 주식연계보상에 대해서는 4%의 PRSI가 계속 부과됨
- 주급이 356유로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PRSI 징수율이 8.5%에서 4.25%로 50% 인하됨
 - PRSI 징수율 인하로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절감되고 그에 따라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43) 지정된 도시지역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주차장 시설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급한 시설 사용료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주차세(parking levy)를 납부해야 함.

-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3) 연금 기금세 부과

- 고용확대 자금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금 기금(pension fund)의 시장가격(market value)에 연 0.6%의 연금 기금세(pension levy)가 부과됨
 - 연금 기금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시적으로 부과될 예정임
 - 0.3%씩 연 2회 부과되며, 2011년의 첫 번째 납부기한은 2011년 7월 25일임
 - 공공부문 연금 기금에는 연금 기금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이는 국고 기금(exchequer funds)에서 공공부문 연금 기금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임
 - 2011년에 대한 시장가격 평가기준일은 2011년 5월 19일이며, 이후 연도는 매년 1월 1일 또는 이에 앞선 회계연도 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기로 함
- 이에 연금 기금 관계자들은 연금 기금세 부과가 연금 기금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확정 급여형(Defined Benefit) 기금 운용자는 고용인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하여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기금 가입자의 경우 기금을 해지하거나 신규 가입이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4) 부가가치세율 인하 및 항공 여행세 폐지

-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행,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인하되고, 항공 여행세(air travel tax)가 폐지됨
 - 아래 열거된 특정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현행 13.5%에서 9%로 인하됨
 - 호텔 및 숙박시설
 - 레스토랑 및 음식공급 서비스

- 음식 및 음료의 테이크아웃(takeaway) 서비스
- 극장, 음악회, 축제 및 놀이공원, 전시회의 입장
- 운동시설
- 미용실
- 신문 및 잡지 구독
- 브로셔, 전단, 프로그램, 카달로그, 안내책자 등의 공급
- 최근 항공 여행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9년부터 더블린(Dublin)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이용자에게 부과되어 온 항공 여행세가 폐지됨

7. 영국

가. 영국 2011회계연도 예산안

[조세동향 11-07]

- 영국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2011년 3월 23일 '2011회계연도 예산안(Budget for 2011~12)' 을 의회에 제출함⁴⁴⁾
 - 2011회계연도의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은 약 7,100억파운드에 예상되며, 재정수입은 약 5,890억파운드에 예상됨
 -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2011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함
 - 지난해 6월 예산책임청은 2011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함
 - 예산책임청은 2011회계연도부터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2013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2.9%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함

44) 영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임

- 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세법개정 내용은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 및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1) 법인세 분야

- 법인세 기본세율⁴⁵⁾이 28%에서 26%로 인하되고, 이후 23%까지 매년 1%씩 인하될 예정임
 -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에 27%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보다 1% 추가 인하된 26%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함
 - 법인세 인하로 2011회계연도에는 425,000,000파운드, 2012회계연도에는 810,000,000파운드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21%에서 20%로 인하됨
-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대상이 되는 단기수명자산(short-life assets)의 등록요건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
 - 영국에서는 사업자가 시설 및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 이를 취득한 회계연도 말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판매 또는 처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시설 및 기계장치를 단기수명자산으로 등록(election)하고 자산별로 자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번 예산안에서는 단기수명자산의 등록요건이 되는 보유기간을 취득 회계연도 말 시점으로부터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시설 및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 함
- 중소기업⁴⁶⁾이 지출한 특정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현행 75%인 추가 소득공제 비율이 2011년 4월 1일부터 100%, 2012년 4월 1일부터는 125%로 인상됨

45) 기본세율은 과세소득이 1,500,000파운드 이상인 경우 적용됨. 과세소득이 30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300,000 ~ 1,500,000파운드 사이인 경우 특정 계산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가된 세율이 적용됨

46) 종업원이 250명 미만이고 매출액이 4천만유로 이하이거나 자산총액이 4천3백만유로 이하인 회사에 해당됨

- 영국은 중소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과세이익 계산시 지출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현행 75%인 추가 소득공제 비율이 2011년 4월 1일부터 100%(2012년 4월 1일부터는 125%)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용의 200%(2012년 4월 1일부터는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백신 연구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40%에서 20%로 인하되고, 2012년 4월 1일부터는 제도가 폐지될 예정임

- 정유사 및 가스사의 이익에 부과되는 보조세(supplementary charge)가 현행 20%에서 32%로 인상됨
 - 영국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정유 및 가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3월 24일부터 정유사 및 가스사의 이익에 부과되는 보조세를 32%로 인상함
 - 영국 정부는 향후 유가가 일정 지표가격(trigger price)⁴⁷⁾ 이하로 인하될 경우 세율을 이전 수준인 20%로 인하할 예정이라 발표함

- 2012년 1월 1일부터 단기부채(short-term chargeable liabilities)에는 0.078%, 장기자본(long-term chargeable equity) 및 장기부채(long-term chargeable liabilities)에는 0.039%⁴⁸⁾로 인상된 은행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은행이 향유하는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은행세를 인상하기로 함

47) 현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영국 정부는 적정 지표가격을 배럴당 75달러로 제안함

48) 안정된 장기자금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자본 및 장기부채에는 단기부채에 적용되는 세율에서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됨

〈표 II-1〉 영국의 은행세율 적용 현황

(단위: %)

기간	단기부채	장기자본 및 부채
2011.1.1~2011.2.28	0.05%	0.025%
2011.3.1~2011.4.30	0.1%	0.05%
2011.5.1~2011.12.31	0.075%	0.0375%
2012.1.1~	0.078%	0.039%

자료: "Overview of Tax Legislation and Rates," 영국 재무부(HM Treasury), 2011.3.23

- 개인 또는 기업이 Gift Aid를 통해 10,000파운드 이상 기부시 신청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현행 500파운드에서 2,500파운드로 인상됨
 - 영국에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기부공제제도인 Gift Aid를 통해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영국 정부는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10,000파운드 이상 기부시 신청할 수 있는 세액공제의 총한도를 현행 500파운드에서 2,500파운드로 인상함
 - 1,001파운드 이상 기부시 세액공제 금액이 기부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은 유지됨

- 2011년 1월 1일부터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이 개정됨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은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한 유보소득에 과세하는 제도임
 - 2011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CFC 중간개발(CFC interim developments)' 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 CFC 중간개발은 영국 재무부가 2012년으로 예정된 CFC 전면개정(full reform)에 앞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발표한 규정임
 -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CFC 규정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규정과 비교하여 일부 항목이 개정됨
 - 거주지국(영국)과의 연관성이 낮아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특

수관계거래에 대해 CFC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

- 지적자산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피지배외국회사에 대해 해당 지적자산 및 피지배외국회사와 거주지국 간의 연관성이 낮을 경우 CFC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
- 조직개편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해 CFC 규정을 적용받게 된 외국회사⁴⁹⁾에 대해 3년간 과세를 면제하는 조항 신설
- 연간 200,000파운드 이하의 금액에 대해 CFC 과세를 면제하고, 회계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현행 계산방식을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

2) 개인소득세 분야

- 개인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인적공제는 2010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됨
-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사업공제(entrepreneur's relief)에 적용되는 한도금액(lifetime limit)⁵⁰⁾을 5,000,000파운드에서 10,000,000파운드로 인상시킴
 - 영국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해 18% 또는 28%의 세율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과세되고 있으며, 사업공제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로 얻은 자본이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임
 - 사업공제제도의 한도금액 인상은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
- 자본이득세의 연간소득공제(annual exemption) 금액이 현행 10,100파운드에서 10,600파운드로 인상됨

3) 간접세 분야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면세점과 등록취소(deregistration) 기준금액이 각각 73,000파운드와 71,000파운드로 인상되고, 저가탁송물(low value consignment)에 대

49) 현재 CFC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과거 적용대상이었던 외국회사도 과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50) 이는 개인사업자의 일생 동안 적용되는 한도금액임

- 한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15파운드로 인하됨
- 2011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70,000파운드에서 73,000파운드로 인상시키고, 등록취소 기준금액은 68,000파운드에서 71,000파운드로 인상됨
- 영국은 유럽연합 국가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중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인 저가택송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가 있음
 - 이런 저가택송물의 부가치가세 면세제도가 조세 간소화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이라는 본래 취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택송물의 면세점을 현행 18파운드에서 15파운드로 인하하기로 함

- 2011년 3월 28일부터 모든 주류에 대한 주세율(alcohol duty rate)이 물가인상률에 추가하여 2%까지 인상됨
 - 알코올 도수(abv)가 7.5%를 초과하는 맥주에 대해서는 일반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의 25%가 가중부과됨
 - 알코올 도수(abv)가 1.2~2.8% 사이인 맥주에 대해서는 일반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의 50%가 경감됨

- 2011년 3월 23일부터 담배세율(tobacco duty rate)이 물가인상률에 추가하여 2%까지 인상됨
 -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인 핸드롤링 토바코(hand rolling tobacco)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추가하여 10%까지 인상함

- 2011년 3월 23일부터 유류세율(fuel duty rate)이 리터당 1페니 인하됨
 - 2011년 4월 1일에 예정됐던 유류세율 인상 계획은 유류세율이 리터당 3.02펜스로 인상되는 2012년 1월 1일까지 연기됨

8. 이탈리아

가. 이탈리아 로마의 여행자세(tourist tax) 도입

[조세동향 11-01]

- 로마 시의회는 2010년 12월 2일에 호텔 등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여행자세(tourist tax)의 도입을 승인함
 - 여행자세 관련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본 여행자세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2010년 7월 28일에 시의회는 여행자세(contributo di soggiorno)의 도입을 승인하였으나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아니 하였음

- 로마 시장인 마우로 쿠티로포에 따르면 여행자세(tourist tax)는 로마시민이나 로마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지방행정서비스에 사용될 재원임
 - 특히 여행자세의 세수 중 5%는 로마시 안의 여행자시설에 투자될 예정임

- 여행세가 부과되는 숙박시설은 로마에 위치하는 호텔, 조식제공 숙박시설, 휴가용 숙박시설(holiday homes and apartment), 캠핑장(campgrounds)임

- 여행세의 세율은 1박을 기준으로 숙박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즉, 4성급, 5성급 호텔에 거주하는 경우, 1박(night)당 3유로의 여행자세를 부담함
 - 반면에 다른 모든 숙박시설은 1박(night)당 2유로의 여행자세를 부담함

- 여행자세의 과세표준은 세율 × 숙박일수(nights)
 - 최대숙박일(maximum nights)은 10일임

- 여행자세는 특정 숙박시설과 특정 여행객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고 있음
 - 유스호스텔에 숙박하는 여행객은 여행세가 면제됨

-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여행세가 면제됨
- 여행자세는 숙박시설에서 체크아웃(check-out)하는 시점에 납부하여야 함
 - 숙박시설은 2011년 1월 1일부터 수집된 여행자세를 로마시 정부에 2011년 7월 이전까지 송금하여야 함
 - 2001년 7월 이후에는 매 3월마다 송금하여야 함
- 한편 유럽여행업자협회(European Tour Operator Association)는 여행자세에 대해 비판함
 - 동 협회의 이사인 Tom Jenkins는 10월 4일에 여행자세의 부과로 인해 유명한 관광지인 로마의 관광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여행자세의 부과를 재고할 것을 통보함

나. 이탈리아 임대소득에 대한 단일세제(flat tax) 도입

[조세동향 11-11]

- 이탈리아 정부는 2011년 3월 14일에 임대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제(flat tax)를 적용할 수 있게 한 Legislative Decree No. 23을 발표함
 - 임대소득의 단일세제는 임대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인적 소유자(private property owner)의 임대소득세 계산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도입됨
 - 임대소득의 단일세제는 4월 7일부터 시행됨
 - Legislative Decree No. 23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납세자는 총임대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단일세제를 적용한 임대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연간 임대수입에 대해 21%(일부 주택은 19%)를 곱하여 계산됨
 - 현행 통합세법(TUIR) 제37조상 일반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임대소득세는 ①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계산한 가상의 소득(phantom income)과 ② 실제 임대소득에서 15%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Max(①, 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됨

구분	현행 제도	단일세제
선택가능성	강제적용	선택적용
적용대상 자산	모든 종류의 자산	거주용 자산
납세자	모든 자산 소유자	개인적 소유자 (Private Property Owners)
세율	0 ~ 43%	19 ~ 21%
필요경비 공제	15%	불가능
과세금액	임대소득의 85% (15%의 필요경비 공제)	임대소득 100%
유·불리	연간 임대소득이 28,000유로보다 낮은 납세자가 유리함	연간 임대소득이 28,000유로보다 높은 납세자가 유리함

다. 이탈리아의 피지배외국회사(CFC)에 관한 시행지침 발표

[조세동향 11-12]

-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2011년 5월 26일에 피지배외국회사 규정(CFC rules)에 관한 시행지침(ruling 23/E)을 공포하였음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CFC rules) : 외국법인을 지배하는 거주자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외국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외국회사에 유보하여 거주국의 과세를 이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국회사에 유보된 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에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반-조세회피(anti-avoidance) 제도임
 - 시행지침에 포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피지배회외국회사(CFC) 규정 적용대상인 외국실체 명확화

- 시행지침(ruling 23/E)에 따르면,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에는 회사와 회사 등이 아닌 외국실체를 포함하지만, ① 특수관계 없는 다수의 투자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② 개별 국가의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의 통제를 따라야 하고, ③ 전문 중개인(professional brokers)에 의해서 관리되는 실체에 대해서 적

용되지 않음

- 따라서 뮤추얼펀드가 위의 ①~③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실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였음
 - 과세당국은 외국실체(foreign entity)가 회사(company)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실체(entity)인 경우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적용하여 왔는데, 실체(entity)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실무상 과세대상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특히 뮤추얼펀드에 관한 적용 여부에 논란이 있었음
 - 새로운 시행지침(ruling 23/E)은 실체(entity)에 관한 요건을 명확히 함

2) 국제회계기준으로 계산한 조세부담 비교를 인정

- 시행지침(ruling 23/E)에 따르면,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거주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이탈리아) 조세부담률의 계산에 국제회계기준을 기초로 계산한 과세소득을 인정함
-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능동사업 요건 : 외국실체가 블랙리스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주된 활동으로 실제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수행하여야 함
 - 블랙리스트 국가 : 조세회피지 협의가 있는 국가로 통합소득세 제1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Andorra, Cyprus, Macao, UAE, Vanuatu 등의 국가
 - 거주지 요건 : 외국실체에 대한 투자가 블랙리스트 국가로의 소득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거주지 요건에 관해서는, 피지배외국회사(CFC)의 유효세율이 이탈리아의 조세부담과 유사한 세율(가상세율)인 경우에 소득은 블랙리스트 국가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봄
 - Ruling 23/E에서는 이탈리아의 조세부담과 유사한 세율(가상세율)을 계산할 때, CFC

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더라도 이탈리아의 세법규정이 여전히 과세소득의 결정에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음

9. 폴란드

가. 폴란드 일부 세법개정 사항

[조세동향 11-02]

□ 폴란드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관련 일부 내용이 개정됨

1) 부가가치세 등록기준 인상

□ 부가가치세 등록 및 과세면제 기준을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PLN100,000에서 PLN150,000으로 인상함⁵¹⁾

-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PLN1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록 및 납부의무가 면제됨
 - 당해 연도에 사업활동을 개시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활동을 수행한 월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조정함
- 2010년 연간 매출액이 PLN100,000에서 PLN150,000 사이의 과세사업자인 경우 2011년 1월 15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invoices) 발행 허용

□ 사업자는 요건 충족시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

51) 폴란드 화폐단위는 즐러티(표기는 PLN으로 함)이며, 2011년 1월 24일 최초 고시기준 PLN150,000은 59,082,000원에 해당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으로는 공급받는 자의 동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안전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관할 의무, 진실성 확보 등이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안심 서명(secure signature)은 요구되지 않음

3) 사회보장기여금 부과한도 인상

- 고령연금(old-age pension) 및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에 대한 최대 과세표준(maximum base) 금액을 인상함
 - 고령연금 및 상해보험의 경우 최대 과세표준 금액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고용주 부담 상해보험료와 근로자 부담 질병 및 출산보험료만이 부과되고 있음
 - 2011년 1월 1일부터 고령연금 및 상해보험에 적용되는 최대 과세표준 금액을 연간 현행 PLN94,380에서 PLN100,770으로 인상함
 - 이는 월평균 급여 예측치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10. 프랑스

가. 프랑스 2011년 재정법 확정

[조세동향 11-02]

-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2010년 12월 29일에 2011년 재정법(2011 Finance Act), 4차 개정 2010년 재정법(2010 Finance Act) 등을 승인함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법령의 사전적 합헌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법령의 공포 및 비준 전에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합헌 여부를 판결함
 - 재정법은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포될 수 있음
 - 승인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요약·정리함

1) 법인세 관련

-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실제발생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따라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9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일반규정이 적용됨

- 차입금이 차입을 하는 회사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의해서 보증되는 경우 특수한 관계가 없는 회사(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란 주주나 특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함
 - 도입 배경: 실제적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인 LBO 방식의 기업 인수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LBO(Leverage Buy-Out):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 즉,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이를 인수대가로 지급할 경우 실제적인 투자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
 - 프랑스 과세당국은 실질투자 없는 인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한도를 제한함

- 자회사 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교환받은 주식은 배당소득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 계속 보유중인 것으로 의제됨
 - 배당소득공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regime)란 수입배당금의 9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주식을 최소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식을 2년간 보유하지 않아 배당소득공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연결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에 지급한 지적재산권의 대가에 대해서는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관련 자본이득의 경우 장기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적용함
- 또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장기자본이득의 범위에 특허권과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개량권(improvements)을 포함시킴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용료(royalty)에 대한 손금부인 규정이 폐지됨
- 판매후리스로 리스한 건물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의 과세이연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 판매후리스: 리스자산을 처분한 후 그 리스자산을 리스하는 거래

2) 소득세 관련

- 2011년에 신고할 2010년 소득세에 대한 최고소득세율이 40%에서 41%로 1%p 인상됨

과세소득구간 (EURO)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세율
0	~	5,963	0	0
5,963	~	11,896	5.5%	5.5%
11,896	~	26,420	14%	14%
26,420	~	70,830	30%	30%
70,830	초과		40%	41%

자료 : 프랑스 국세청, <http://www.impots.gouv.fr/portal/dgi/home?pageId=home&sfid=00>

- 주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2011년 1월 1일 이후 대출하는 대출금과 2011년 9월 30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정신적 피해(moral damage)에 대한 보상금이 1백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11년 1월 1일 이후 18%에서 19%로 인상됨

-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됨
 - 이전 규정에 따르면 배당금의 50%의 세액을 115유로(부부의 경우 230유로)에 달할 때까지 공제할 수 있음

- 시장성 있는 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소액자본이득 비과세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폐지됨
 - 이전 규정에 따르면 25,830유로 미만의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음

- 자본이득세율이 2011년 1월 1일 이후 18%에서 19%로 인상됨
 - 부동산의 자본이득세율도 2011년 1월 1일 이후 16%에서 19%로 인상됨

- 조세감면한도(Overall tax reduction limitation)가 축소됨: 18,000유로 + 과세소득의 6%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조세감면한도: 2011년 이후 20,000유로 + 과세소득의 8%
 - 조세감면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조치를 받음으로 인해 감소되는 조세부담의 감소액의 총량에 대한 한도

3) 부가가치세 관련

- TV, 전화 및 인터넷 통합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율은 표준세율인 19.6%를 적용함
 - 이전 규정에 따르면 특정 통신서비스의 경우 경감세율인 5.5%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나 통합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명확하지 않았음

4) 은행세 도입

- 2011년부터 체계적 위험세(Systematic risk tax)로 알려진 은행세를 도입함
 - 이는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막기 위하여 시행되며 과세표준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며 0.2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됨

나. 프랑스 정부의 2011년 수정 예산안 채택

[조세동향 11-11]

- 프랑스 정부는 5월 11일에 2011년 수정 예산안(modified 2011 budget bill)을 채택함
 -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부담 최고한도(tax shield)의 폐지,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출국세(exit tax) 신설,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상, 자산보유세 감소 등임
 - 본 예산안은 7월 중순 경에 프랑스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 다음은 2011년 수정 예산안의 주요 개정사항임

1) 조세부담 최고한도(tax shield)의 폐지

- 직접세 부담의 최고한도 규정이 2011년부터 폐지됨
 - 현행 제도에서는 직접세의 총부담액이 납세자의 직전연도 소득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직접세에는 소득세, 자산세, 부유세, 거주세(dwelling tax), 추가사회부담금이 포함됨
- 또한 2012년부터 부유세를 부담하는 거주자(individuals)는 그 거주자가 부담하는 직접세의 총부담액이 직전연도 소득의 50%를 초과할 경우 부유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없음

2) 미실현 자본이득에 관한 출국세(Exit Tax) 신설

- 프랑스 거주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이전 후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출국세가 소급적용됨
 - 적용대상자는 ① 가족과 함께 직접적·간접적으로 최소 1%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프랑스 거주자나 ②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직접·간접 지분 평가액이 1.3백만유로를 초과하는 프랑스의 거주자임
 - 출국세는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 적용됨
 - 출국 8년 후에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납세자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세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3) 상속세 · 증여세 세율 인상

□ 상속세 · 증여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됨

과표구간 (EUR)		세율(%)	
		개정 전	개정 후
7,953	미만	5	5
7,953	-	10	10
11,930	-	15	15
15,697	-	20	20
544,173	-	30	30
889,514	-	35	40
1,779,029	이상	40	45

자료 : <http://www.legifrance.gouv.fr/>, Tax Analyst

□ 또한 증여자의 연령에 비례한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됨

- 현행 제도에서는 증여자가 증여 시점에 65세 이하인 경우 법정연령의 직계비속을 위하거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4촌 조카를 위한 현금 증여금액은 31,395유로까지 소득공제하고 있음

4) 자산보유세 감소

□ 납세자의 기초적인 거주와 관련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토지세(land tax)는 2012년부터 가치분 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현행 제도는 가치분 소득의 상한이 없음

□ 외국인(foreigner)이나 프랑스 국적상실자(expatriates)는 그의 프랑스 원천소득이 총소득의 75%에 미달할 경우에는 프랑스의 별장(vacation home)의 부수된 토지 임대가액의 20%를 자산보유 관련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됨

- 프랑스에 거주 후 외국으로 이사한 사람은 위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 다만, 외국으로 이사한 사람은 거주를 이전하기 전 10년 중 최소한 3년은 프랑스에 거주하여야 함

III 아시아

1. 대만

가. 대만의 ‘특종물품 및 용역세 조례’ 초안 발표

[조세동향 11-08]

- 대만 행정원은 2011년 3월 10일에 투기적인 부동산거래와 사치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안⁵²⁾을 승인가결하고 입법원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임
 - 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법안은 조세제도의 공평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온건히 하여 양질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대만의 현행 제도가 부동산의 단기적인 매매에 대한 조세부담이 낮아서 투기행위를 조장하기 쉽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있었음
 - 한편으로 고소비계층이 정당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불만도 있었음
- 이 법안에 의한 과세대상과 세율은 <표 III-1>과 같음
 - 비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초과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함
 - 부동산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실매매가액임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

52) ‘특종물품 및 용역세 조례’

라지는 것은 아님

- 과세되는 클럽 회원권은 입회권리임
- 탈퇴로 인하여 반환되는 보증금 성격의 회원권은 포함되지 않음

〈표 III-1〉 특종물품 및 세율

특종물품	세율
소유기간 2년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지와 법에 근거하여 건축허가증을 발급받은 도시의 토지	10%, 15%
NTD300백만 이상인 소형(9인승 이하) 여객운수차량, 유람선, 비행기, 헬기, 초경량 운반차량	10%
NTD500백만 이상인 귀갑(거북이껍질), 산호, 상아, 모피 및 가공상품	10%
NTD500백만 초과인 클럽 회원권	10%

- 이 법안에는 재무부에 위임규정을 두어 과세대상 중에서 ‘합리적이고 일반적이며 비자발적’으로 매매되는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면제대상으로는 정부나 공인기관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물품을 판매한 경우, 은행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강제되는 경우 등을 포함함
- 납세의무자는 부동산과 사치품의 판매자이고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함

2. 중국

가. 중국의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조세동향 11-02]

- 중국 국세청은 2010년 12월 30일에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제1차 연차보고서를 출간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제1차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착수했던 건수를 아래에 <표 III-2>처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1998년 4월에 도입함

<표 III-2> 연도별 APA 착수건수

연도	쌍방적 APA	일방적 APA	소계
2009년	7건	5건	12건
2008년	1건	6건	7건
2005~2007년	4건	30건	34건
소계	12건	41건	53건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대상은 무형자산의 구입·판매거래가 62%, 무형자산의 이전이나 사용거래가 19%, 서비스규정이 19%를 차지하고 있음
- 서명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사용된 이전가격방법으로는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은 높은 비교가능성이 요구되고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과 이익분할법(Profit-Split Method)은 적용을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용된 예가 많지 않음
 - 서명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적용된 이전가격방법은 35건이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15건이 원가가산법(Cost-Plus Method)이고 4건이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이며, 2건이 이익분할법(Profit-Split Method, PS), 2건이 기타의 방법임
- APA에 소요된 기간은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가 쌍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비하여 단기간이 소요되었고, 대부분 2년 이내에 절차가 종결됨
 - 쌍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58%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쌍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25%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는 전부 2년 미만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내용 중 적용기준, 진행절차, 소급적용, 갱신 및 종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특수관계자와의 연간거래금액이 40백만위안을 초과(약 605만달러)하여야 하고, ②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신고된 상태이어야 하며 ③ 관련규정에 의한 문서가 준비·유지·제출되어야 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는 사전미팅(prefiling meeting), 공식적인 적용(formal application), 조사와 평가(examination and evaluation), 협상(negotiation), 협약과 서명(agreement and signing), 집행과 감독(execution and monitoring)의 단계를 거침
 - 중국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촉진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조사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미팅을 중요시함
 - 중국 과세당국이 검토하고 협상하는 데, 쌍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경우 24개월, 일방적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경우 12개월이 소요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적용하는 기업은 과세당국이 승인한 APA의 이전가격방법과 계산에 대하여 APA 승인연도부터 10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해 갱신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추어 일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는 사전에 결정된 만기일의 도래 등의 사유로 종결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에 대한 갱신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만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까지 과세당국에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기간 동안에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가 종결되는 사유는 ①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만기일이 되는 경우, ②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③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결정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상당히 변경되거나 납세자의 사업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임

나. 중국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의 세무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행정규칙 (Notice 26) 발표

[조세동향 11-03]

- 중국 국세청은 2010년 12월 13일에 행정규칙(Notice 26)을 발표하여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venture capital investment enterprise, FIVCIEs)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명확하게 함
 - 동 행정규칙(Notice 26)을 통해 기존의 규정(2003년 Notice 61)이 유효함을 확인하여 도관으로 취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기존의 규정(2003년 Notice 61)에 의하여 도관으로 취급되었던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이 2008년 통일된 소득세법하에서는 세무상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 불확실하였음
 - 기존의 규정(2003년 Notice 61)하에서는 법인이 아닌 조인트벤처로 구성된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을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때 도관체로 처리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자의 지분별로 과세했음
 - 2008년 소득세법을 통일했을 때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을 세무상 도관으로 취급하는 것이 불확실하게 됨
 - 통일된 소득세법은 법인이 아닌 조인트벤처를 도관체로 허용하는 (구)외국소득세법 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 그래서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의 세무상 처리가 불확실해짐
 - 기존규정(2003년 Notice 61)을 적용할 수 없다면,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이 얻은 수익과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이 분배하는 배당이 각각 과세대상이 됨
 -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을 도관으로 취급하는 것에 비하여 외국투자자는 과중한 조세부담을 하게 됨

- 특히 외국인투자자는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존규

- 정(2003년 Notice 61)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리한 규정임
- 기존규정(2003년 Notice 61)은 외국투자자는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이 개별 펀드매니저에게 그들의 투자활동을 모두 위임하는 경우에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됨
 - 이 경우에 외국벤처자본투자기업(FIVCIE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이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0% 원천징수세만 발생함
 - 적용가능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10%보다 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다. 중국 거주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입

[조세동향 11-04]

- 중국 국가위원회는 2011년 1월 27일 시범지역에 한정하여 거주용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함
 - 시범지역은 상하이와 충칭으로 하고 베이징은 포함하지 않음
 - 상하이는 2010년 12월에 1제곱미터당 24,176위안의 집값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0년 1월에 비하여 21%, 11월에 비하여 7.6% 인상된 수준이었음
 - 국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지방정부에 거주용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과세대상 재산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치는 중국 내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임
 - 중국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 조치에 앞서 2011년 1월 26일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구매가격의 60%를 선지불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이전에는 선지불 비율이 50%였으며 2011년 1월 26일의 조치는 이를 60%로 상향 조정하여 부동산 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신화통신에 소개된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재산세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하이의 경우, 과세대상은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구매한 거주용 건물이며 재산세율은 0.4%에서 0.6%가 될 것이고 1주택에는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
- 충칭의 경우, 과세대상은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구매한 고급주택이며 재산세율은 0.5%에서 1.2%가 될 것임
- 중국의 다른 언론에서는 재산세율을 상하이 3%, 충징 4% 등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각 지방정부의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중국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세혜택 조치

[조세동향 11-06]

- 중국 국가위원회는 2011년 2월 9일에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세혜택을 주는 행정규칙⁵³⁾을 발표함
 - 자가생산하는 소프트웨어에 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IC)에는 사업세(business tax)를 면제하며,
 - 적격 소프트웨어 회사와 집적회로(IC) 디자인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험, 정보시스템의 집약화, 컨설팅, 운용, 유지, 집적회로(IC) 디자인에 대한 5%의 사업세(business tax)를 면제함
 - 집적회로(IC) 산업을 수행하는 적격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우대조치를 함
 - 기존의 주요 부품기업과 집적회로(IC) 특별장비업체처럼 집적회로(IC) 포장과 시험에 대해서도 법인세 우대조치를 적용함
 - 신설 집적회로(IC) 디자인 회사, 적격 소프트웨어회사, 생산라인이 폭 0.8마이크론 이하의 집적회로(IC)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함⁵⁴⁾
 - 폭 0.25마이크론 미만을 생산하거나 80억위안(약 12.1억달러)을 초과하는 투자를 한 집적회로(IC)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집적회로(IC)

53) 2011년 소프트웨어 및 IC회로산업발전 장려정책에 관한 국무원 정책공고 제4조

54) 현재의 법인세율은 25%임

제조업자가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 중국은 이 행정규칙 이전에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비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⁵⁵⁾ 이러한 조치는 2010년에 만기되었음
- 이에 중국은 아직까지도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혜택을 유지함

3. 홍콩

가. 홍콩 2011-2012 예산안 발표

[조세동향 11-06]

- 홍콩 정부는 2011년 2월 23일에 2011-2012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예산안은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특정세목⁵⁶⁾의 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55) 1980년대 중반부터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하여 조세 및 비조세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존의 주요한 조세 및 비조세혜택은 2000년 소프트웨어 및 IC회로산업 발전 장려정책에 관한 국무원 정책공고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의 국내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새로 설립된 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3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며, 80억위안을 초과하고 폭 0.25마이크론 미만의 집적회로(IC)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
- 적격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대규모 집적회로(IC)기업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을 적용
- 기타의 조치로 소프트웨어기업의 근로자임금 전액 손금산입, 2년 가속상각, 재투자에 대한 세제환급,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면제

56) 근로소득세(salaries tax), 이윤세(profits tax), 재산세(property tax), 동산거래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 홍콩의 최근 경제상황은 2010년에 상당한 경제회복을 경험했고 2010-11년에도 흑자재정을 예상하고 있음
 - 2010년에 6.8%의 GDP 증가와 3.8%의 실업률 감소가 있었음
 - 2010-11년에 71.3백만홍콩달러에 달하는 흑자재정을 예상하고 있음
 - 이러한 예상치는 예산안의 25.2백만홍콩달러의 적자재정과 2009-10년의 실적치인 25.2백만홍콩달러의 흑자재정을 넘어서는 수치임
 - 2010-11년 흑자재정은 실질 경제성장과 인지세 수입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 예산안의 내용 중 조세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근로소득세율 등의 특정세목에 대한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근로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특별인지세·담배세·최초차량등록세를 인상시킬 계획임
 - 현행 근로소득누진세율과 근로소득표준세율은 <표 III-3>, <표 III-4>와 같으며 예산안에서는 변동이 없음

<표 III-3> 홍콩의 근로소득세율(누진세율)

2010/2011과 2011/2012	
과세소득	한계세율
HKD 40,000	2%
HKD 40,001 ~ HKD 80,000	7%
HKD 80,001 ~ HKD 120,000	12%
HKD 120,001 ~	17%

<표 III-4> 홍콩의 근로소득세율(표준세율)

2010/2011과 2011/2012	
15%	

- 거주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 SSD)를 부과함
 - 특별인지세는 2010년 11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거주재산으로 24개월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에 부과됨
 - 양도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세율은 6개월 미만 보유시 1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보유시 1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유시 5%가 됨
- 이윤세(profits tax)의 세율과 재산세(property tax)의 세율, 동산거래에 대한 인지세 세율은 <표 III-5>, <표 III-6>, <표 III-7>과 같이 변동이 없음

<표 III-5> 홍콩의 이윤세율

2010/2011과 2011/2012	
형태	한계세율
법인(incorporated)	16.5%
비법인(unincorporated)	15

<표 III-6> 홍콩의 재산세율

2010/2011과 2011/2012
15%

<표 III-7> 동산 거래에 대한 인지세율

2010/2011 과 2011/2012	
과세소득(HKD)	세율(HKD)
2,000,000	100
2,000,000 초과 ~ 2,361,760	100 + 2,000,000 초과액의 10%
2,361,760 초과 ~ 3,000,000	1.5%
3,000,000 초과 ~ 3,290,320	45,000 + 3,000,000 초과액의 10%
3,290,320 초과 ~ 4,000,000	2.25%
4,000,000 초과 ~ 4,428,570	90,000 + 4,000,000 초과액의 10%
4,428,570 초과 ~ 6,000,000	3%
6,000,000 초과 ~ 6,720,000	180,000 + 6,000,000 초과액의 10%
6,720,000 초과 ~ 20,000,000	3.75%
20,000,000 초과 ~ 21,739,120	750,000 + 20,000,000 초과액의 10%
21,739,120 초과	4.25%

- 근로소득세 계산시 공제 중에서 자녀공제, 경로공제, 부양가족공제가 일부 인상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8>과 같음

<표 III-8> 근로소득세 계산시 공제액

	2010/2011(HKD)	2011/2012(HKD)
인적공제:		
기본	108,000	108,000
기혼	216,000	216,000
한부모	108,000	108,000
자녀공제: (출생~9세까지)		
출생연도	100,000	120,000
그 외	50,000	60,000
부양부모(조부모): (60세 이상)		
기본	30,000	36,000
추가공제(동거부양가족)	30,000	36,000
부양부모(조부모): (55~59세)		
기본	15,000	18,000
추가공제(동거부양가족)	15,000	18,000
부양형제자매	30,000	30,000
장애자공제	60,000	60,000
공제(최대한도):		
자가교육비용	60,000	60,000
주택대출이자	100,000	100,000
노인거주부양비용	60,000	72,000
적격 퇴직부금	12,000	12,000
적격 자선기부	소득의 35%	소득의 35%

- 개인 사용을 위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최초등록세가 약 15% 정도 인상됨
- 담배에 대한 부담금이 한 개피당 0.5홍콩달러 인상되며 이는 기존의 담배부담금이 약 41.5% 정도 인상되는 것임

- 홍콩의 예산안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인플레이션 억제, 미래에 대한 준비, 국민후생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세제조치를 제외한 주요 조치로는 토지공급의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홍콩이 초과적인 유동성과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주거용 재산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시정하고자 주택용 토지공급을 증가시킴
 -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해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3년 만기 정부채권인 “iBond”를 발행하고자 함
 - 미래에 대한 준비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1호

2011년 6월 23일 인쇄

2011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